발간등록번호 11-1352159-001132-02

2018년도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가이드라인

Poliomyelitis Diphtheria
Ebola virus disease Viral Hepatitis B
TOXOPIASMOSIS Gonorrhea
Lassa fever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engue fever Scarlet fever Tuberculosis
Clonorchiasis Salmonellosis Paragonimiasis
Chlamydophila pneumoniae infection Murine typhus

VIII A Babe Schistosomiasis S M 질병관리본

African Trypanosomiasis

목차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가이드라인

제1장 서론	······ 1
제1절 발간 목적	1
제2장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2
제1절 군중모임	2
1.1 정의	2
1.2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대응 계획수립 시 고려	사항
제2절 감염병 관리 필요성	4
2.1 목적	4
2.2 기본방향	4
2.3 적용범위	4
2.4 주요 관리 내용	4
2.5 수행체계	5
이 G 스테기즈	C
2.6 수행기준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기	
	계획 수립 7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기	계획 수립 ······ 7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기에 기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7 ····· 7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기 제1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제2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 ······ 7 ····· 7 ···· 8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기에 기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7 ····· 7 ···· 8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기에 기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7 ···· 8 ···· 8 ···· 9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기에 기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 7 ····· 8 ···· 9 ···· 11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가지 제1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제2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1 군중모임 행사 감염병관리 대책본부 2.2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제3절 위험평가 3.1 위험평가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7 ····· 8 ····· 9 ····· 11 ···· 11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가 제1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제2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1 군중모임 행사 감염병관리 대책본부 2.2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제3절 위험평가 3.1 위험평가 계획 수립 3.2 위험평가 절차	계획 수립 7 8 8 11 11 11 11 12 13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가지 기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제1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제2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1 군중모임 행사 감염병관리 대책본부 2.2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제3절 위험평가 3.1 위험평가 계획 수립 제4절 사전 준비	계획 수립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가지 1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제1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제2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1 군중모임 행사 감염병관리 대책본부 2.2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제3절 위험평가 3.1 위험평가 계획 수립 제4절 사전 준비 4.1 예방접종	계획 수립 7 8 8 11 11 11 11 12 13 13 13

목차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가이드라인

4.5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훈련	15
4.6 자원 관리	16
4.7 개최지역 감염병 대응관련 사전 점검	16
제4장 감염병 대응	18
제1절 검역	18
제2절 감시	26
제3절 역학조사	30
제4절 실험실검사	31
제5절 환자/의심환자/접촉자관리	36
제6절 위기소통	40
제7절 예방홍보	43
제5장 환경 관리 ···································	/12
세08 원8 원9	40
제6장 감염병 대응 평가	50
〈 부록 〉	
· · · · · · · · · · · · · · · · · · ·	55
붙임 2. 감염병의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체계 ······	
붙임 3.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붙임 4. 감염병 별 격리기준	
붙임 5. 자원관리	
붙임 6. 군중모임행사 대비 감염병 관리시스템(예시)	74
붙임 7. 감염병대응 일일상황보고(예시)	
붙임 8. 감염병예방 홍보자료(예시)	85
붙임 9. 군중모임 행사 관련 감염병 대바대응 계획 양식(지자체)	
붙임 10. 군중모임행사 시 환자 및 감염병관리 시스템	
붙임 11.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대응 상황보고서식	97
붙임 12.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부서 업무 및 연락처	102



제1장 서론

1절 발간 목적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관련 관계부처의 감염병대응을 성찰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군중모임 시 발생 또는 유입가능한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함
 - 군중모임 개최 전 전담조직 구성, 행사 성격에 따른 위험분석, 감염병 감시 및 대응, 환경보건, 식품·물 위생, 생물테러대응,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과 점검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특히, 국내유입 및 확산 가능 감염병의 조기 인지를 위한 강화된 감시체계 운영,
 환자와 의심환자 및 접촉자 관리,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업무담당자 교육훈련,
 예방수칙 홍보 등으로 감염병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또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서 각종 국제 또는 국내 행사 계획 시 감염병을 포함한 공중보건문제 대응계획의 수립·시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 동 자료는 WHO의 "Public health for mass gatherings: Key considerations"과 과거 국내 군중모임 개최 시 작성 된 감염병 대응 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음

○ 발간 이력 : 제정 2018. 8



제2장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1절 군중모임

1.1. 정의

- 군중모임(Mass Gathering)
 - 군중 모임 행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진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함께 활동하는 행사¹⁾를 말함
 - · 단, 단순히 참여 인원수 외에 행사성격과 참여국가, 인종, 사용언어, 발생가능 감염병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군중모임을 주최하는 지역 사회, 도시 또는 국가의 의료 등 공중보건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2)로 정의
- 군중 의학(Mass Gathering Medicine)
 - 군중모임에서 발생하는 부상, 온열질환, 한파, 감염병 등 건강문제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중재사업을 통해 잠재적인 건강위험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 처치, 이송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¹⁾ Mass-gathering medicine: a descriptive analysis of a range of mass-gathering event types. Locoh-Donou S, Guofen Y, Welcher M, Berry T, O'Connor RE, Brady WJ, Am J Emerg Med. 2013 May; 31(5):843-6.

²⁾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unicable disease alert and response for mass gatherings: Key considerations. Geneva (CH): WHO; 2015

1.2.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대응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국내 외 대규모 행사 개최로, 국내에 발생하지 않는 해외감염병 유입, 국내의 토착화된 감염병의, 지역사회 및 전국으로 확산 또는 다른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른 감염병 대바대응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
 - ① 위험분석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 지에 대해서 분석
 - ② 감시체계 :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시체계의 효과성 분석, 보완 및 개선 필요성 검토
 - ③ 대응: 일어난 일에 대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 ④ **정보파악**: 행사 참여 및 가동 인력정보, 개최지역 운영인력 및 비상연락망 구축, 시설(의료, 숙박, 음식점 등) 등 인프라 파악
 - ⑤ **사전 준비 및 점검** : 행사장 및 숙박시설 의무실, 식음료관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인력, 운영인력에 대한 예방접종, 행사시설,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환경 점검 및 검사 실시
 - ⑥ 검역감염병인 6종의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 엔자인체감염증, 폴리오)과 바이러스 출혈열 발생 국가에서 군중모임 참여 시 검역을 위해 정확한 인적정보, 교통편 등이 사전에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검역소에 공유
 - ⑦ 각 지역별로 병의원, 약국 정보는 필수적으로 확보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 군중 모임 행사 개최 전에 (지역)의사회 및 약사회 등에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보고 체계,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사항 등 숙지
 - 또한, 참가자에게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시설 등에 대한 정보 안내

2절 감염병 관리 필요성

2.1. 목적

- 위험평가를 통한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대국민 위험발생 방지 및 군중모임행사의 성공적 개최
- 감염병 발생 상황 예상, 각 지역 내 자원 파악 및 보강,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준비 및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2.2. 기본방향

- 행사유형, 위험평가, 참가국가 또는 개최지의 감염병 현황 및 특성 파악
- 감염병 조기인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 O 중점관리 대상 감염병 관리 등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

2.3 적용범위

○ 계획적 또는 비계획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2.4. 주요 관리 내용

- 군중행사 전 행사성격 및 위험평가를 통한 감염병대응계획 수립
 - 개최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공중보건문제 및 참가자, 방문객의 성격· 숫자 등에 따라 유입가능한 감염병 분석 및 대응방법 수립
- 범부처·범기관 위기소통체계 등 협력체계 구축운영
- 행사기관-개최지역 간 각 분야별 위기분석 및 협조체계구축
- 공중보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기후, 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대한 관리 사업 수행
- 군중모임행사에 필요한 진료체계 구축 및 비축물자 관리
 - 의료서비스, 감염병전문기관, 감염병 예방 물품 등

- 감염병 위기대응 기반 강화
 - 지침 개발 및 정비, 교육훈련, 검역, 실험실체계, 정보공유 등

2.5. 수행체계

- ㅇ 각 기관별 업무
 - 국가주관 행사개최 기준이며, 지자체 주관 행사가 개최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의 각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 변경하여 수행
 - ※ 대상 기관은 유입 및 확산 가능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

대상	주요내용
① 국가기관	
질병관리본부	 ▷ 위기분석을 통한 중점관리대상 감염병 선정 ▷ 감염병 별 검역,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관리 등 대응계획 수립통보 ▷ 개최 지역 지자체 및 조직위원회의 실행계획 수립지시 및 진행사항 점검 ▷ 행사 개최 시기 별 감염병관리사업 실시 및 진행사항 점검 ▷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관리/기술지도 및 평가 ▷ 감염병 진단실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지자체 진단역량 강화지원 ▷ 군중모임행사 감염병관리 결과 정리 및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리종사자관리▷ 행사장 등 식음료에 대한 검식·검수▷ 개최 지역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집단환자 발생 시 식음료에 대한 환경역학조사
환경부	▷ 개최 지역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수질 관리▷ 집단환자 발생 시 물(조리수 등 제외)에 대한 환경역학조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집단환자 발생 시 식품의 원산지 조사 등에 대한 환경역학조사 협조
② 지자체	
지자체 (시도청,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 군중모임행사 대비 감염병대응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 ▷ 행사 전 숙소, 행사시설, 음식점 등 사전위생점검 및 소독실시 ▷ 지자체 역하조사반 편성운영 및 시군구 역학조사 지휘 ▷ 비상방역체계 운영 등 보고체계 강화 ▷ 의심 증상 발생 및 유행여부 감시 ▷ 환자/접촉자 등 감염병관리, 식품위생, 환경위생 등의 시행 ▷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대상 행사 대비 감염병 예방 홍보
보건환경연구원	 ▷ 행사 전 숙소, 행사시설, 음식점 등 사전위생점검 시 검사지원 ▷ 지역사회 및 행사 참여자 감염병 의심증상자 발생 시 진단 ▷ 역학조사에 따른 인체/식품/물 등에 대한 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진단 (필요시 질병관리본부 등 지원)

③ 민간기관	
행사 주관 기관	▷ 지정·협력의료기관 선정 ▷ 자원봉사자, 운영인력, 지정의료기관 및 파견의료진 대상 감염병예방교육 ▷ 자원봉사자, 운영인력 대상 사전 검진 및 예방접종 ▷ 참가자 및 관람객 대상 예방접종,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예방수칙 홍보 ▷ 의심증상자 발생 시 신고 ▷ 접촉자 관리, 격리자 발생 시 병의원 외 격리장소 확보 및 관리 ▷ 행사 시설 내 감염병발생 시 식음료, 화장실 등 환경관리
행사 지정 및 협력의료기관	> 감염병 인지 시 보건소 신고▷ 이송 환자 신속 치료▷ 격리필요 감염병 발생 시 국가격리병상 이송
국가지정격리병상 의료기관	▷ 국가격리병상으로 이송된 환자 치료
개최장소 진료소 (예: 폴리클리닉 등)	▷ 증상자 발생 시 1차 진료, 검체 확보 및 의뢰, 병원이송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고
기타의료기관	▷ 감염병 의심 환자 진단 및 치료▷ 감염병 신고·보고▷ 감염병(의심)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 관리 협조
질병정보모니터망	▷ 감염병 예방 홍보 협조▷ 감염병환자 발견 및 진단 시 인적시항 및 발생현황 통보, 병의원에서는 검체 채취▷ 각종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해 인지 시 관할 보건기관에 즉시 통보

2.6. 수행 기준

- 감염병 위기분석 등을 통해 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우려가 상당히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예시) 2016년 리우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 감염병의 유입 및 타 지역 전파 등의 우려가 있어 행사주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감염병관리를 요청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예시) FIFA U-20축구대회, 2018년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회(AfDB), ISSF세계사격선수권 대회,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 ㅇ 그 밖에 감염병관리 및 예방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실시
 - ※ 단, 국제행사로 검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와 협력체계 구축하고, 국립검역소 등에 입국정보 공유



제3장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종합 계획 수립

1절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수립

- 위기분석을 통해 도출된 감염병에 따라 국외 감염병 유입가능성, 국내감염병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각 감염병 별 특성에 따라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기존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추가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행사 시기별로 세부 추진과제 수립 및 시행
 - (행사 전) 사전예방사업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구축
 - (행사 중) 감염병 감시 및 신속한 감염병 대응조치 시행
 - (행사 후) 감염병 감시 지속,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련 평가

〈작성 예시〉

I. 추진배경

- ㅁ 배경
- ㅁ 행사개요
- 기간 :
- 장소 :
- 대회 규모 및 참가인원
- Ⅱ. 비전 및 목표
- Ⅲ. 세부 추진 과제
- 1. (대회 전) 목표(ex. 감염병 예방 철저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세부사업목표(ex. 1 예방사업 2 협조체계 구축 3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4 감염병예방홍보 5 점검)
- 2. (대회 중) 목표(ex. 신속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도치 시행)
- 세부사업목표(ex. ① 입국자 검역 ② 감염병 감시 ③ 감염병 발생 시 대응 ④ 감염병 소통 및 예방홍보)
- 3. (대회 후) 감염병 대응 평가

Ⅳ.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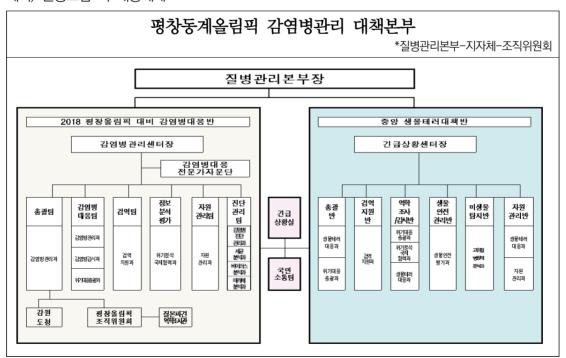
- ㅁ 업무체계도
- ㅁ 추진기관 및 업무 내용
- V. 추진일정

2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1. 군중모임 행사 감염병관리 대책본부

- 군중모임행사를 개최하기 전 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등 신속한 감염병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 감염병관리 총괄, 감시, 역학조사, 환자관리, 검역, 정보 분석, 자원관리, 진단 관리, 위기소통 등으로 업무 구분하여 팀 구성
 - 감염병대응 계획 수립 시 각 분야별 대책 마련
- 감염병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예방접종, 식품 및 환경위생점검, 방역 등의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군중모임행사 중에는 대책본부 내 모든 부서가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감염병관리 전담조직에서는 식품, 물, 숙소 환경관리 등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 및 부서와는 기밀한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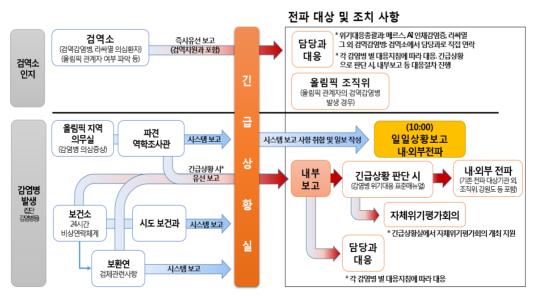
예시) 군중모임 시 대응체계



2.2.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군중모임 주최기관과 해당 지역 지자체 감염병관리, 식품위생, 환경관리 부처 등 정보공유 및 소통 등 협조체계 구축
 - 참가자, 각 기관 별 인력구조(지원인력 포함). 사용 시설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공유
 - 주기적인 상황점검회의 등으로 감염병대응계획 및 시행상황 점검 등 각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합동 점검
 - 각 위험요소별 감염병관리담당자*를 지정* 식품, 숙소, 행사장, 가용인력 등에서 감염병 발생 대비 등
 - 해당 인력은 환자가 격리된 경우에는 격리여부 확인 및 격리 시 생필품 제공, 숙박시설 확보 등 불편사항 해소
- 행사 개최 시에는 각 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일정 시간에 보고자료 공유를 통한 상황발생 대응 실시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상황공유체계



*긴급상황: 감염병위기대응 표준매뉴얼(<mark>1712</mark>월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국내 원인불명,제출현 감염병의 확산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감염병감시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 담당자 지정
-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감염병환자 발생 시 신고보고, 환자관리 국가격리병상 이송 체계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군중모임행사 운영 인력(경찰, 군부대, 용역업체,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정보 확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연락체계 구축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범부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합동대책본부'



3절 위험평가

3.1. 위험평가 계획 수립

- 군중모임과 관련하여 발생 및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외 감염병 유입가능성, 국내감염병의 개별 및 집단발생 가능성을 바탕으로 위험평가 계획 수립 필요
- O 전략적인 위험평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국내 및 행사 지역	국내, 행사지역 및 주변지역 관련 자체
	행사 인접 지역	발생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
국가	참가자 출신 국가 및 지역	참가국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확정시까지 지속 변경 가능하기에 지속 확인 필요
	개최지의 의료시스템	
의료서비스	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 능력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체계	 관련 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필요
음식, 물, 숙박시설 안전	참석자들에 대한 안전한 음식과 물 공급가능 여부	

3.2. 위험평가 절차

- ㅇ 군중모임의 위험요소 관련 체계적인 정보 수집
 - 군중모임 종류
 - 인구통계학적 특징
 - * 개최국 및 참가국의 참가자, 관객 등 군중모임 관련 되는 모든 사람 관련
 - 개최지의 지리적 접근도, 기후 요소와 같은 환경 요소 (하천, 강, 상하수도, 지하수 등 포함)
 - 정치적. 언론의 관심여부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을 구분하여 위험평가를 실시
 - 정보수집 시 파악한 참가국, 개최국의 참여자 중 특별히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평가 실시

① 국내 감염병 위험평가

- 국내 발생하는 감염병 평가를 위하여 과거년도 군중모임 기간 동안 발생했었던 법정감염병 종류 파악
 - * 예시) `19년 4월 초 행사 진행 시 `18년 3월말~4월 중순 기간 발생했었던 법정감염병에 대한 정리
- 종류 파악 후 감염병의 전파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발생 정도, 실제 군중모임 시 발생가능성, 실제 발생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실시 * 예시) 수인성·식품매개, 접촉성, 환경 관련, 매개체 전파 등
- 기본적인 자체발생 감염병 수준 이외에 군중모임으로 인하여 발생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사람 간 전파가 될 수 있는 감염병의 경우 그 발생이 평소보다 급증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평가
- 자체 평가 결과를 3절 감염병 대비활동의 기반 자료로 활용

② 국외 감염병 위험평가

- 군중모임 참가국에서 유행 및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 * 참가국 보건부 홈페이지, 미국CDC 여행자 감염병 정보 관련 안내 (www.nc.cdc.gov/travel/destinations/list/) 등 참조
- 행사종료 시점까지 지속해서 참가국가에서 발생 및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 * 질병관리본부 발표 국내외 감염병 동향 등 참조
- 정보 수집 후 국내 유입 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종류 정리 후 유입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세부 대응전략 수립
 - * 예시)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감염병(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국내 유입 이후 사람 간 전파 등으로 인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홍역 등)

4절 사전 준비

4.1. 예방접종

- (대상) 참가자. 자원봉사자. 기관 업무담당자 및 개최 지역 주민
- (항목) 위기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A형간염, 장티푸스, 황열, 수막구균성수막염, 파상풍 등
 - *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2주 이상 전까지 접종 완료
 - **(예방약)** 말라리아
 -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군중모임 경우에 의료기관 진료 후 예방약 처방
 - (예방물품) 마스크, 모기기피제, 모기장, 손소독제, 콘돔 등
- (행정사항) 필요한 경우, 소식지 및 공문 등을 통해 참가하는 국가에 방문자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 종류 안내 및 사전접종 권고 필요

4.2. 방역 및 소독

- (대상) 경기장, 공연 등 개최장소 및 주변, 선수촌 등 참가자 숙박장소, 집단급식 시설, 수송차량 등
- (항목)
 - (**방역**) 계절별 위험 감염병 및 매개체 등에 따라 방역 항목 결정 후 구서, 구충 등 주기적으로 실시 및 방역물폼 확보
 - (소독) 감염병발생 시 환경소독을 위한 소독약제 확보(차아염소산나트륨 등)
- (행정사항) 각 건물별 전담자 배치 및 감염병환자 발생 시 현장에 신속 소독 조치 확인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4.3 감염병 예방 홍보

- O (자료개발)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및 교육자료 개발
- (홍보)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및 교육자료 개발 배포
 - 감염병예방수칙, 검역제도, 의료기관 등 안내 등
 - * 안내책자, 보도자료, 포스터, 리플릿, 전광판, SNS 등 활용

예시) 국제행사 시 감염병예방 홍보

1)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



2)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12. Public Health Services and Related Policies

Public health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sease surveillance,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health protection (through water and air quality control) and environmental health issues will be in place throughout the venues where the Games are held.

The Special Interfect of Speci

There are no vaccination requirements for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participants and toursts are reminded that there are risks of viral and backenal tood-borne illnesse, especially when consuming food purchased from street vendors. Frequent handwashing and consumption of bottled water are strongly recommended. As such, Hepatitis A vaccination is recommended as a precaution.



4.4 감염병 실험실검사 체계 구축

- **(인프라)** 실험실검사를 위한 검사역량 점검 및 검사 체계 마련
 - * 검사장비 점검, 인력동원계획 수립, 시약 보유현황 파악 등 검사역량 점검
- o (체계) 감염병 유행 대비 신속검사 체계 구축
 - * 검사기관별 역할정립, 중앙-지자체-민간 협업체계 마련, 결과 보고체계 구축, 검사체계 공유 등
- O (검체이송) 신속하고 안전한 검체이송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점검
 - * 지역 보건소 및 전문 이송업체 등을 활용한 검체 이송 체계 마련

4.5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훈련

- (교육) 감염병대응계획 및 각 감염병에 대한 의료진, 업무담당자, 운영인력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 특히, 각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토록 반복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등 필요
- (훈련) 발생 가능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도상 및 현장 대응 훈련 실시
 - *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통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 교육 및 훈련

-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및 교육자료 개발:배포
 - * 감염내과 및 해외여행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 (대응메뉴얼) 업무담당자 및 선수단팀 의료진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제공
 - (업무담당자) 감염병 별 특성, 관리체계, 역학조사서 등의 대응매뉴얼
 - * 질병관리본부-조직위-지자체-의료진대상 대응매뉴얼, 소책자 배포 및 교육('18.1월)
 - (올림픽의무실) 감염병의심증상자 대응가이드라인
 - * 폴리클리닉, 경기장/비경기장 의무실(선수/관중), 조직위 지정 의료기관별 가이드라인
 - (선수단팀닥터) 감염병의심증상자 발생 시 대처사항 및 연락체계
 - * 특히. 팀닥터 회의 시 보고 필요한 '증상' 등에 대한 내용 알림체계 구축
- (맞춤형 교육) 검역 및 지자체-폴리클리닉-조직위 지정의료기관별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련 교육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비고
선수단, 통역 및 자원봉사자	- 감염병의심증상자 발생 시 1339신고체계	'17.12.05
강원지역 지자체 담당자	- '평창동계올림픽관리'시스템 및 감염병대응체계	'17.12.21
조직위 베뉴 매니저(수습사무관)	- 감염병 대응 교육	'18.1.09
1339콜센터	- 감염병 관련 상담	'18.1.19
의료관계자	미디어센터 담당의료진	'18.1.19,
의표전계시	미디어센터 급증의표선	23~24
동해 검역소검역관	검역대응 매뉴얼 교육	'18.1.16

- (대응훈련) 발생 가능 상황별 대응 도상 및 현장훈련
 - ① (도상 훈련) 평창올림픽대회 대비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토의식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점검, 공유 및 미비점 보완
 - 평창올림픽대회 기간 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 감염병발생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한 대응사항 점검 및 개선 사항 도출

- ② (현장 훈련)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 감염병 발생시 관련 부서의 실전 합동훈련 실시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및 동물인플루엔자 감염증 발생에 대한 현장 대응
 - · (수인성) 선수촌, 경기장 등에서 발생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감시, 역학조사, 실험실 검사. 환자관리 등
 - · (AI) 강원지역 국내·외 관광객 감염병의심사례 발생 시 보건소, 국가격리병상의료기관, 국립 검역소 등 대응 체계 점검

4.6 자원관리

- ⓐ 의료기관 등
 - 행사관련 화자 치료 의료기관 확보
 - O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 접촉자 중 격리 필요자 관리 시설 확보
- (b) 물품
 - 개인위생 물품 : 손소독제, 마스크, 콘돔, 보호구 등
 - 항바이러스제 : 오셀타미비르 등
- ② 시설
 - 격리텐트. 국가지정병원 등 입원격리시설 확보
 - 앰블란스(격벽설치된 것 확보) 및 응급헬기 등 이송시설 ※ 단. 행사장 내 의무실. 지정의료기관 등은 개최지에서 반드시 확보
- (d) 이력
 - O 실험실검사. 예방접종요원. 진료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 인력확보
 - 0 자원봉사자

4.7. 개최지역 감염병 대응관련 사전 점검

- (**항목**) 감염병대응계획 수립 후 점검이 필요한 사항의 주요내용을 정하고 세부적 으로 점검내용을 정함.
- (조치) 주기적으로 이행상태 점검 및 결과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 대비 사전 점검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O)	과제명(-)	주요실적(일시기재)	담당부서	협조부서
(대회 전) 감염병 예방철	지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방사업	○ 울림픽 개최지역 대상 방역	좌동	- 지원에산 교부(17.1) - 공용보건계획수립(17.3)	평창울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청
	○ 올림픽 및 패털림픽 관계자 예방점종	좌통	- 지원예산 교부(17.1) - 공용보건계획수원(17.3) - 예방접용계획수원 접종 실시(17.12~)	평창울림픽 조직위원회	감염병관리과, 예 방점종관리과
	○ 울림픽 및 패털림픽 관계자 집단생활자 결핵검진	좌동	- 업무협약 및 검진실시(18.1~)	평창울림픽 조직위원회	결핵에이즈관리과
	○ 환경검사	좌동	- 노로바이러스 및 레지오넬라 검사요청('17.11~')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 개인위생	좌동	 연중 순씻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홍보 실시(*17)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용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상태 점검 	- 검역	- 주요 검역소 물통, 장비 등 검역소 점검 (인천공항(*18.1.9), 양양공항(*18. 1.16))	검역지원과	해당 검역소
		- 생물테러 신속대용 및 대용역량	-현장 방문 및 점검('17.8.7, '17.12.13, '18.1.10.)	생물테러대용과	
		- 감염병 진단체계	-강원도 보환연 등부지원 1차 현장점검(17.12.13)	감염병진단관리과	감염병관리과
		- 환자관리체계	-조직위·지자체·질본 업무협조체계 회의 (17.1.10, 4.14, 7.19, 10.11, 11.22, '18.1.9)	감염병관리과	위기대용총괄과
		- 신중감염병 대용		위기대용충끝과. 자원관리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발생대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분석센터
		- 예방접종	-인물투엔자, 수막구균성수막염 시행여부 점검회의(18.1.9)	감염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 방역		감염병관리과	강원도행
□첩조체계 구축	○ 대책본부 구성		-명단확정 및 발행(*18.1.4)	감염병관리과	해당부서
	환자관리체계 마련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전문가자문단 위촉(17.5.16) 및 자문실시	감염벵관리과	
		- 평창울림픽 지원위원회	-총14차 점검회의자료 작성(17.2~18.1)	감염병관리과	
		- 합통점검회의	-조직위-지자체-질본 업무협조체계 회의 (17.1.10, 4.14, 7.19, 10.11, 11.22, '18.1.9)	감염병관리과	
		- 국제회의	-행창동계울림픽대비 군중의학 국제심포지엄 (17.11.8~9)	감염병관리과	위기분석 국제협력과
□감염병 예방 교육*훈련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및 교육자료 개발 		-의료인 대상 교육자료(18.1)	감염병관리과	
			-보건소 답당자용 교육자료(18.1) -1339상답원 및 건급상황실 요원 대상 교육자료(18.1)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관용 교육자료(18.1)	감염벵관리과	
	〇대용明뉴얼	- 업무담당자 매뉴얼	-정창동계울림픽 및 패털림픽 대비 중정관리 대상 강업병대용 매뉴얼 및 소책자본 (17.10~'18.1)	감염병관리과	
		- 검역대용 세부매뉴얼	-개발 완료 보고(18.1.18) 및 검역소 배포(1.19)	검역지원과	해당부서
		- 울림픽 의무실별매뉴얼	-물리물리닉용, 선수의무실, 관중의무실, 지정의료기관대상 가이드라인 4종(17.10~18.1)	감염병관리과	
		- 선수단 팀닥터 매뉴얼	-팀닥터용가이드라인(영문판)('17.10~'18.1)	감염벵관리과	
	O 맞춤형 교육	- 감염병 예방 및 대용 관련 교육	-조직위 의료매니저(MOM)교육(18.1.9) -파건대상 역학조사관교육(18.1.15) -1339상당원 교육(18.1.19) -미디어센터 파건의료진교육(18.1.19, 23) -역학조사관 대상 세미나(18.1.31)	감염병관리과	
		- 생물테러 대용요원교육	-강원지역 보건, 경찰 등 대용요원 교육(17.12.13.)		
		 주요 공항검역소 대용 관련 교육 	-양양공항 답당 검역관 교육 실시(18.116)	검역지원과	



제4장 감염병 대응

1절 검역

1.1. 목적

○ 국제행사인 군중 모임 행사 개최에 따른 국가 간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 출입국자,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에 대한 검역 수행으로 국내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민의 건강 보호

1.2. 기본방향

○ 공항, 항만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으로 검역감염병 유입우려 시 검사. 격리. 보건위생 등의 예방관리 조치

1.3. 검역대상 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 고시)】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 * WHO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PHEIC) 선포 현황: 폴리오 1종(2018.8. 기준)

1.4. 군중모임(국제행사) 대비 시기별·기관별 조치사항

기간	조치사항	협조기관
3~6개월 전	- 국제행사 주최기관 사전 업무협의 · 국제행사 참석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입국정보 사전 제공 협의 * 정보제공 범주(국가, 입국자명, 여권번호, 도착일시, 도착편명 등) 협의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국제행사 주최기관
1~3개월 전	- 국제행사 참석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국내 검역절차 안내문 사전 배포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국제행사 주최기관
1개월	- 국제행사 참석 입국자 입국정보 사전 명단 확보 및 공유% - 입국자 검역대응 계획 수립 - 주요 검역소 국제행사 이행준비 현장점검 · 검역 관련 장비, 진단 실험실, 격리시설(실), 검체 수송체계 등점검 - 홍보물품 및 배너 제작 및 배포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국제행사 주최기관
전~2주 전	- 유관기관(CIQ 등) 협조체계 구축 · 의심환자 분류 즉시 신속·안전한 이송을 위해 출입국관리 사무소, 세관, 공·항만공사, 항공사 등에 사전 협조체계구축 - 검역단계 신종 감염병 발생 교육훈련 실시 - 감염병 예방홍보 협조(기내 안내방송, 공·항만내 전광판 게시 등)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국립검역소 - 법무부, 국토부, 세관, 공·항만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
2주전 ~ 행사 중	- 국제행사 참석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입국정보 확보 및 공유 - 검역 대응 TF팀 구성 및 국립검역소 비상근무 실시 - 필요시 검역소 인력지원(파견근무) - 국제행사 참석자 중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 및 홍보 강화 실시 - 검역 일일상황보고 실시 - 검역단계 유증상자 시·도 및 현장대응팀 통보 -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자 시·도 및 현장대응팀 통보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국립검역소 - 국제행사 주최기관
	- 검역단계 유증상자,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국립검역소 회신	시·도(시군구)질병관리본부현장대응팀국제행사 주최기관

1) (3~6개월 전) 관계기관 사전협조체계 구축

- 검역단계 의심환자 발생 시 검역, 역학조사, 정보공유, 이송 등 원활한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CIQ) 및 군중모임(국제행사) 주최기관과의 사전 협조체계 구축
 -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국제행사 시작 1개월 전 참가자 이름, 항공편명, 여권 번호 등 입국정보 사전 제출 요청·협조

〈입국정보 제공양식〉

Nation	Last name	First name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Arrival Date	Arrival time	Arrival Flight No.
Kenya	BADJI	Mouhamed	1987-02-19	M00000	2018. 0. 00	14:00	EK000

- * 입국자 필수 수집 정보:국가, 입국자명(여권과 동일하게 작성), 생년월일, 여권번호, 도착일시, 도착편명
- * 입국자 중 VIP 별도 표기 요망

2) (1~3개월 전) 국내 검역절차 안내문 사전 배포

○ 우리나라 검역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군중모임(국제행사) 주최기관에 국내 검역 절차 안내문을 전달하여 국제행사 참석 입국자 대상 안내문 사전 배포

〈예시〉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시 제공한 국내 검역절차 안내문

국내 입국자 검역 안내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는 해외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입국자 검역을 위해 각 국가는 AfDB 연차총회 참석자 명단을 AfDB 연차총회 준비 사무국을 통해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발열 여부를 체크하며, 메르스 유행지역 입국자는 입국자개별적으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한 6개 감염병(콜레라, 황열, 페스트, 메르스, AI, 폴리오)의 발생국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Health Questionnaire)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단계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조사를 통해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 격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한민국 검역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on Quarantine for Entrants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is conducting quarantine activities on all entrants into the country in order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infectious diseases from overseas. First, to ensure swift quarantine processing for entrants, each country must submit a list of participants in the 53rd Annual Meetings of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in advance through the AfDB Annual Meeting Secretariat, All entrants to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hecked for fever using thermal cameras and, in particular, the body temperatures of those from countries where MERS is endemic will be checked individually. In addition, entrants from countries with reported cases of the six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cholera, yellow fever, plague, MERS, AI, and polio) must accurately fill out a Health Questionnaire and submit it to quarantine officers upon entry, Entrants who are experiencing symptoms such as fever and coughing at the time of quarantine may be transported to a designated hospital during the quarantine process and receive treatment in isolation, KCDC asks for your patience and cooperation with the quarantine procedures of the Republic of Korea, * Infectious diseases designated as subject to quarantine in Korea

- 3) (1개월 ~2주 전) 입국자 검역대응 계획 수립 및 국제행사 대비 교육·훈련. 홍보
 - (입국자 명단 공유) 군중모임(국제행사) 참석 입국자 입국정보 사전 명단 확보 및 국립검역소 공유
 - (검역대응 계획 수립)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방안 및 인력 운영 계획 수립
 - (현장점검) 주요 검역소 군중모임(국제행사) 이행준비 현장점검
 - 군중모임(국제행사) 관련 입국자 입국정보 기반하여 주로 이용 예정인 공·항만의 검역 관련 장비, 진단 실험실, 격리시설(실), 검체 수송체계 등 현장점검 실시
 - (감염병 예방 홍보) 홍보물품 및 배너 제작·배포
 - (기내 안내방송)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제출 안내
 - (배너 설치) 주기장 및 입국장에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건강상태질문서 제출과 화승객 검역절차 안내
 - (공항 내 전광판 홍보) 감염병 예방수칙(손씻기 등) 홍보
 - (리플릿 배포) 감염병 예방수칙(손씻기 등) 및 이상증상 발생시 1339 신고 안내 홍보
 - (교육·훈련) 감염병 대응 매뉴얼 기반 검역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매뉴얼 교육)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검역소별 자체 교육 실시
 - (대응훈련) 발생 가능 상황별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 ·도상훈련 :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토의식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점검, 공유 및 미비점 보완
 - · 현장훈련 : 유관기관 참여하에 감염병 발생 대비 현장훈련 실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의심환자 분류 즉시 신속·안전한 이송을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관. 공·항만공사, 항공사 등에 사전 협조체계구축
 - (입국 수속)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해당 항공사 직원이 검역관으로부터 의심환자의 여권을 수령하여 대리 입국 수속
 - (통관)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세관직원은 검역관실로 이동하여 의심환자의 세관신고서 수령 및 휴대소지품 검사 시행
 - (의심환자 이송)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 의심환자, 검역관의 보안구역 통과 공항공사에 협조
 - (소지품 소독) 입국수속 및 통관수속 후 의심환자의 소지품 소독 실시

4) (2주 전 ~ 행사 중) 입국자 검역 강화

- (입국자 명단 공유) 군중모임(국제행사) 참석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입국정보 현행화 및 국립검역소 공유
- (검역대응 TF팀 운영) 검역 대응 TF팀 구성(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와 국립검역소) 및 국립검역소 비상근무 실시
 - * 필요시 검역소 인력지원(파견근무)
- (입국자 검역) 군중모임(국제행사) 참석자 중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게이트검역 또는 타겟검역* 실시
 - * 게이트검역 : 주기장 또는 입국장게이트에서 오염지역 출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는 조치
 - * 타겟검역 : 사전 입국자 명단을 파악하여 주기장게이트에서 특별검역(개별 체온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을 수행하는 조치
- (검역 일일상황보고) 군중모임(국제행사)참석 입국자 대상 검역 결과 일일상황보고 실시
- (유증상자 및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자 모니터링) 검역단계 유증상자 또는 건강 상태질문서 미제출자 발생 시 시·도 및 현장대응팀에 명단 통보하여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및 국립검역소에 모니터링 결과 회신

5) 세부 검역절차

① 검역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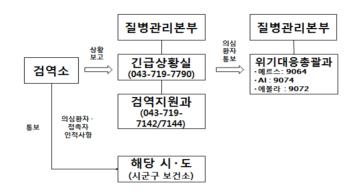
운송수단	대 상	방 법
항공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 게이트검역(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주기장(입국장)게이트에서 오염지역 출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실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항 선박 및 입국자	○ 승선검역 - 검역감염병 감시기간 이내에 입항한 선박 - 승객·승무원 :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선의가 있는 경우 건강확인서 제출로 대체
선박	검역감염병 비오염지역 입항선박	○ 전자검역 - 전자검역으로 입항한 선박 중 일부를 선정하여 검역조사에 준한 보건 위생관리 점검 실시
	크루즈	○ 승선검역 - 오염지역에서 국제행사 참석자 등이 탑승한 크루즈(선상호텔 포함)에 대해 검역관이 배에 탑승하여 검역 * 선상호텔에 대해서는 검역소장 판단 하에 입항시 최초 1회 승선검역 실시 * 선의가 있는 크루즈의 경우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은 건강확인서 및 승객·승무원 명부로 대체
육로		 ○ 제출서류(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 -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생략 기능 ○ 발열감시 - 입경장에서 입국심사 실시 경우 · 선수단 등 승객은 입경장에서 발열체크 실시 후 입국심사 · 차량운전자는 차량심사대에서 발열체크 - 입경장에서 입국심사 미실시 경우 · 제출서류* 확인 *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②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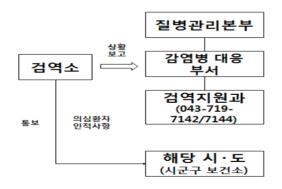
구분	방법
검역감염병 의심환자일 경우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 의심환자 신고 및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 Al 의심환자는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임시 격리시설(실)에 임시 격리 ○ 증상에 따른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는 경우 병원에서 검체채취 ** 국립검역소 지역거점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검역소) 또는 사도 보건환경연구원 ○ 접촉자 분류 및 SMS 통보*, 해당 접촉자 명단 질병관리본부**, 관할 시·도 (시군구), 항공사·선사·해운 대리점 통보 * 외국인의 경우 국내 휴대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SMS 전송 **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승객, 승무원 명단 전원 명단 통보 ※ 세부 조치사항은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과 해당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름
검역감염병 의심환자가 아닐 경우	○ 잠복기 동안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지 말고 관할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보건교육 후 입국조치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 해당 감염병 관리부서로 의심환자 입국 현황 정보 알림 및 보고 - 의심환자 건강상태질문서, 인적사항 자료 송부 * 대상감염병(9종) 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수막구균성수막염·홍역·디프테리아·결핵

6) 비상연락 보고체계

- ① 메르스. AI 등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에볼라 포함)
 - 검역소 담당자 ⇒ 해당 검역소장(과장), 검역지원과, 긴급상황실 보고
 - ※ 세부 조치사항은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과 해당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름



- ②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홍역 등) 의심환자 발생 시
 - 검역소 담당자 ⇒ 해당 검역소장(과장), 검역지원과, 감염병 대응부서 보고



- ③ 일일 검역대응 현황보고(국립 검역소 해당)
 - ㅇ 보고기준: 당일 24시 기준
 - 보고일시: 익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역지원과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제출
 - 보고내용: 해당일 국제행사 참석자 검역조치 현황
 - * 입국자 현황,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여부, 유증상자 수, 유증상자 조치 등

2절 감시

2.1. 목적

○ 군중모임 개최를 통한 중점관리 대상 감염병에 대한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2.2. 기본방향

- 위기분석 및 감염병대응계획을 통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강화된 감시시스템 운영
- 현재 운영되는 감시체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자료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시체계 추가 운영
- 효과적인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안내자료 개발배포 및 운영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실시
- 질병정보모니터망, 관련 학회, 기관 등과 긴말한 협조를 통해, 행사 기간 내 민감도 높은 감염병 감시

2.3 주요감시시스템

1) 전수 및 표본감시

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특성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	기생충감염병 정기적 조사 요	유행 여부 조사·감시 요
	(6종)	(12종)	(19종)	(20종)	(6종)	(17종)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¹⁾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흥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네라오페혈증 발진타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레토스피라증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 등) 두창 보통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동물인플루엔자	편충증 요충증 소충증 간합흡충증 정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룸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종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²⁾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콤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 펠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군(VRSA)감 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교속 교종(CRE)감염증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		다제내성아시네토박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실모발라교 감염증, 정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흡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흡송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흡송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흡송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협송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EP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EP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EPEC) 감염증, 함복보기를 보임하는 함께 보임을 하는 함께 하는 함께 보임을 하는 함께 하는 함께 보임을 하는
감시 방법	법정감염병감시 ⁷⁾	법정감염병감시	법정감염병감시 ²⁾ (예외: 인플루엔자는 표 본감시)	법정감염병감시	표본감시 ⁸⁾	표본감시
신고 ⁵⁾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²⁾	지체 없이	7일 이내	7일 이내
보고 ⁶⁾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²⁾	지체 없이	매주 1회	매주 1회

1) B형간염 신고범위 : 급성B형간염

1) B형간염 신고범위: 급성B형간염
2) 인플루엔자는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 매주 1회 보고함
3) 신종인플루엔자는 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4) 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형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5)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7) 법정감염병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제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가나체계의 감시체계임

8) 표본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2) 병원체감시

감시 시스템	정의				
가. 급성설사질환 병원체감시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를 연계한 급성 설사질환의 세균 및				
(EnterNet)	바이러스 조기 검출 및 분석하는 감시시스템				
나. 펄스넷(Korea PulseNet)	급성설사원인병원체 발생 감염원 추적 및 유행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다. 글스켓(Korea Pulsenet)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계 실험실 감시 시스템				
다. 해양환경 내 병원성비브리오균 감시	해양환경에서 분리되는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발생 양상 파악 및 예측하고 해양환경에				
(VibrioNet)	분포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균 경보체계 운영				
라.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질병관리본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협력의료기관을 연계한 지역사회 급성호흡기감염증				
(KINRESS)	유발 원인 바이러스 규명을 위한 실험실 감시 시스템				
마. 그성충충기네그가니(AriNiot)	질병관리본부, 민간 1,2차 병의원, 임상검사센터를 연계한 급성의 세균성 호흡기질환				
마. 급성호흡기세균감시(AriNet)	원인병원체의 검출 및 분포동향을 분석하는 감시시스템				
바 에테르바이크스 카니니스테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8개소), 전국 58개 의료기관을 연계한 엔테로				
바.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시스템	바이러스 실험실 진단 및 유행주 분석을 수행하여 환류하는 표본감시시스템				

3) 증후군감시

O 대상 : 응급실증후군 감시 참여 의료기관

○ 내용 :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급성출혈열증후군, 급성설사증후군, 급성호흡기증후군(중증), 급성설사증후군(산발), 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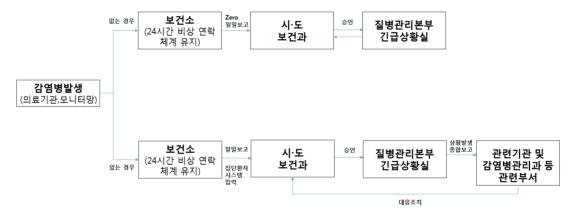
4) 집단환자발생감시

○ 대상 : 개최지역 등

내용 : 개최지역 주민 및 참가자 등에서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인플루엔자 등 집단발생 등

O 보고절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감염병집단발생보고관리→일일보고 및 집단화자발생



5) 군중모임 행사 시 의심 증상자 모니터링

○ 대상 : 행사지역 의무실, 협력의료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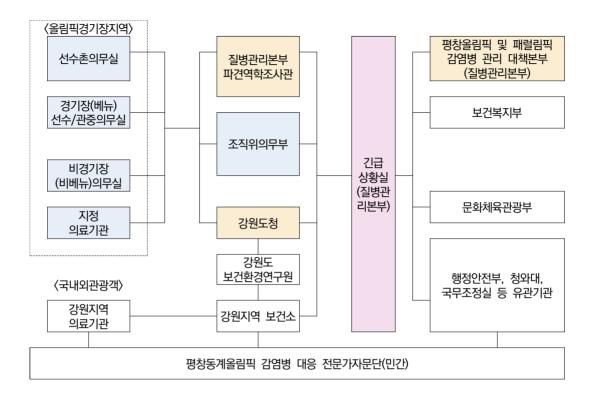
○ 내용 : 감염의심증상(설사, 발열, 기침 등), 감염병환자발생 및 조치결과

① 유증상자 발생현황 : 설사, 발열, 발진, 구토, 기침 등

② 조치현황 : 병원이송 및 치료상황 등

* 특히, 메르스 등과 같이 국내유입 시 위험이 큰 감염병의 모니터링 시에 입국 후 일정기간 감염병 감시 및 발생 시 즉각 관리절차 마련 시행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의심증상자 모니터링



6) 질병정보 모니터망 활성화

- O 대상 : 각 지역별 질병 정보 모니터 지정기관(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등)
- 0 내용
 - (감시) 감염병(법정감염병이외의 질환도 포함)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 입수 시 보고체계 운영
 - (예보) 중점관리대상 감염병에 대한 발생현황 및 예방수칙 안내(매스컴, 반상회, 단체 및 모임 등 활용)

2.4. 행정사항

- 기존 감시 시스템에서 인지되지 않는 감염병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개선 또는 특별 감시체계 구축 운영 필요
- ㅇ 감시분석보고서, 시스템 개선계획, 업무협의 자료 등 문서화

3절 역학조사

3.1. 목적

○ 감염병 발생 시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원인병원체와 감염원을 규명하여 전파경로 차단 및 확산방지

3.2. 기본방향

○ 감시 중 발견된 감염병의심 증상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집단발생여부 파악, 적절한 감염병관리 조치로 추가 확산 방지

3.3. 주요내용

-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 역학조사를 통한 규모파악, 전파양상, 유행여부 파악
- 현장조사 및 환자조사, 검사, 감염관리(통제)대책 권고시행

구분	감염병	신고·보고	역학조사 주관		역학조사	조가비 너
一下正	1110	511.77	개별	유행	시기	주관부서
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지체없이 신고·보고	시·군·구	아래의 유행역학조사 기준에 따름	지체없이	감염병 관리과
3군	결핵	TI-110001 N.J. H.J.	시·군·구	시·군·구 (시·도, 중앙)	7일 이내	결핵에이즈 관리과 결핵조사과
	레지오넬라증	지체없이 신고·보고	시·도	시·도 (중앙)	3일 이내	감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시·군·구	시·도	지체없이	관리과
4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TI-1000 117 117		시·도 (중앙)	TIFIIOIOI	위기대응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바이러스성출혈열		사도	중앙	기체없이	총괄과
지정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7일이내 신고, 주 1회보고	-	아래의 유행역학조사 기준에 따름	-	감염병 관리과

3.4. 행정사항

- 기존 감시 시스템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감염병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개선 또는 특별 감시체계 구축 운영 필요
- 감시분석보고서, 시스템 개선계획, 업무협의 자료 등 문서화

4절 실험실검사

4.1. 목적

O 신속한 검사수행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인지·차단

4.2. 기본방향

- O 위험성평가에 따른 사전 검사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
- 군중모임으로 인해 예측되는 검사 수요 증가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체계 유지
- O 검사 결과의 신속하고 명확한 보고체계 운영

4.3. 주요내용

1) 계획 수립

- 가. 실험실 검사 관련 인프라 강화
 - 검사량 증가, 검사 소요시간 단축 등을 고려해 감염병 검사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검사시약, 소모품 등을 확충

〈주요 고려사항〉

-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 및 지역에 과거(이전 몇 년간) 발생 또는 유행해왔던 감염병의 검사량 : 감염병 감시 강화, 언론의 관심 등에 따라 검사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음
- 행사 참가국의 발생 또는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 해당 감염병 검사를 위한 장비, 시약 등을 구비 해야 함
 - * 질병관리본부 위험평가 보고서 등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검사 소요시간 설정(단축) : 감염병 및 루머의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이내 검사 결과 환류
 - 검사 경험이 적으나 행사로 인해 국내 유입이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해 자체적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정도평가를 수행
 - 검사 SOP 재정비 및 수립

나. 검사 협업체계 구축 · 운영

- ※ 자체적 검사 인프라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사 기간 중 감염병 대유행의 발생 시 신속히 실험실 검사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질병관리본부 등), 인접지자체, 민간과의 검사 협업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중앙 및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족한 검사 자원(장비, 인력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 장비 대여, 인력 파견 등
- 비상 시 중앙 및 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긴급 투입(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현황을 파악

- 비상 시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검체를 직접 운송해 검사 수요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과 협력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얻어 비상연략체계를 구축
- 민간 의료기관의 검사역량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민간과의 연계체계 구축

다. 의사소통(communication) 능력 강화

- 행사 기간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마련 시 실험실 검사 부서도 참여
- 감염병 검사 결과를 신속히 보고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고려사항〉

- (대상)검사 결과 보고 대상을 정해야 함
- (시간)검사 결과 보고 주기 또는 보고 시간을 정해야 함
- (내용)보고 또는 공유하는 검사결과 정보의 종류, 양 등을 정해야 함
 - * 예시 : 음성/양성 정보만 제공 또는 검사방법/세부검사값(Ct값 등) 제공 등
- (보고방법)검사 결과 보고 방법을 구축·운영해야 함
 - * 예시 : 온라인 보고 시스템 활용, 이메일 보고, 유선보고 등
 - 실험실 검사 기관 내부 직원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
 - 비상 시 활용 가능한 외부 실험실 검사 기관 또는 전문가들과의 비상연락체계
 를 구축·운영
 - 행사 지역 내 보건소, 의료기관, 개최장소 진료소의 연락체계(담당자 및 연락처 파악 등)를 마련해야 하며 검사의뢰 가능 감염병, 검체채취 방법, 검사체계, 검사 의뢰절차 등에 대해 안내·홍보
 - * 리플렛, 포스터 등 활용할 수 있음

라 검체운송체계 운영

- ※ 자치단체(광역시·도) 내의 검체운송은 보건소 등 자치단체 인력 등 인프라 횔용
- 검체 수거 시점, 검체 도착지(실험실), 운송 주체를 정하고 검체 운송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
- 은송주체는 검체 수거 완료 시 해당사항을 실험실 검사 수행부서에 알려야 하며,
 실험실 검사 수행부서는 검체의 운송현황 및 예상 도착시점 등을 모니터링
 - * 검체 수거/운송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적절한 보호구(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병 대유행 발생 등 비상 상황 및 정밀 분석 등을 위한 추가적 검체 운송체계의 구축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비상 검체 운송체계 구축

마. 검체 라벨링

- 검체의 라벨링 체계를 구축
 - * 라벨링에 포함되는 정보의 종류(검체재취일, 검체종류, 검체채취 장소 등)를 선정하여 코드화

2) 계획 이행

가. 행사 이전

- 관련된 모든 기관 및 담당자에게 수립된 실험실 검사 대응계획 공유
- 모든 비상연락체계 점검
- 실험전용공간·장비·구비 시약·보호구 등이 충분한지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 점검
- 채취 전, 후 검체 관련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담당역학조사관을 파악하여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검체의 라벨링 체계 및 검체 채취의 주의사항 등을 사전 전달
- 행사 지역 내 보건소, 의료기관, 개최장소 진료소 대상 실험실 연락체계, 검사 체계도, 검사의뢰 절차, 검체채취 방법 등을 안내·홍보
- 군중모임행사 계획, 위험평가 결과 등에 따른 행사 시설 및 인근 부대 시설 등에 대한 감염병 검사 실시
- 수립된 종합계획 및 감염병 실험실검사 세부 대응 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나. 행사 중

- 24시간 감염병 검사 수행 체계 운영
- 감염병 검사 결과 보고 철저
 - * 정해진 시간 또는 간격에 따라 보고하되, 양성 건수가 없는 경우도 반드시 보고
- 담당자가 업무인수인계 철저
 - * 전일 발생한 특이사항 반드시 전달

다. 행사 중 대규모 유행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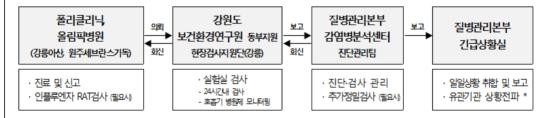
- 수립된 계획에 따라 검사 협업체계 가동
- 담당 역학조사관을 통해 검사의 우선 순위 결정
- 현장의 발생 상황 및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한고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소통 강화

3) 행사 종료 후

- 실험실 검사 대응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실험실 검사 대응 종합보고서 작성 및 공유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감염병 실험실 검사

- ① 중앙-지자체 검사협업체계 운영
 - (협업형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내 동부지원내 현장검사지원단에 감염병분석센터 검사 관리인력 및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인력 파견
 - * (근무형식)1일 5인 근무(감염병분석센터 1명, 강원도보환연 2명, 타 시·도 보환연 2명)
 - * (파견기간) '18.2.5.~2.25.(동계올림픽, 3주) 및 '18.3.5.~3.18.(패럴림픽, 2주)
- ② 감염병 의심검체 24시간내 검사 및 정보공유
 - 법정감염병 검사 및 호흡기병원체 모니터링
 - 신속한 검사상황 정보공유를 위한 연락체계 유지
 - * 진단관리팀. 현장검사지원단. 파견역학조사관. 생물테러이동실험실 등
 -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감염병분석센터 내 일일 비상대기조 운영
 -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생물테러대상감염병 등의 양성확인시
- ③ 폴리클리닉 및 지역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검사 체계도 배포



〈 올림픽 기간 감염병 실험실 검사 〉

구분	주요 내용
기관별 검사대상 감염병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현장검사지원단(강릉)) 폴리클리닉 및 올림픽병원에서 검사가 의뢰되는 경우, 법정감염병 검사(48종) 시행(붙임 6)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보건환경연구 원 검사 후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시행 * 검사인력, 장비, 시약 등 실험실검사 전반 지원
검사업무 내용	○ 법정감염병 검사 시행(유전자 및 항체검사) ○ 호흡기감염증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증 병원체 모니터링 시행
검사의뢰 절차	○(호흡기증상) 폴리클리닉에서 인플루엔자 신속진단검사(RAT) 및 검체채취하여 병원체 모니터링을 위한 실험실 검사 의뢰 가능 * (RAT 검사요건)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검체채취) UTM을 이용하여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두 등) 도찰물 채취 * (메르스의심환자) RAT음성 일지라도, 최근 14일 이내 중동방문시 낙타접촉, 현지병원방문력 있는 경우 파견역학조사관의 판단에 의해 조치 ○(위장관증상 및 기타 감염증) 폴리클리닉 및 올림픽병원에서 진료후 필요시 실험실 검사 의뢰 가능
검체 운송 방법	○(일반 검사 검체) 보건소가 폴리클리닉 및 올림픽병원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현장검사지원단으로 운송 *보건소가 폴리클리닉에 검체채취용기/3중 검체수송용기 공급 ○(정밀 검사 검체) 보건소/운송업체가 폴리클리닉, 올림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감염병분석센터로 운송

4.4. 행정사항

- 행사 전에 반드시 실험실검사를 위한 장비, 소모품, 시약 등의 점검하여 필요 시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내용 문서화
- 실험실검사 대응계획, 감염병 검사 결과보고, 업무협의 자료 등 문서화

5절 환자/의심환자/접촉자관리

5.1. 목적

○ 군중모임 중 감염병 환자 및 의심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치료, 격리, 접촉자 모니터링 등 감염병 대응 조치를 통한 추가 발생 및 확산방지

5.2. 기본방향

- 감염병 의심 증상 인지 시 격리. 치료 등 신속한 환자관리
-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모니터링 및 관리

5.3. 주요내용

- 1) 감염병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 A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 (집단발생) 2명 이상이 같은 기간 내, 물 또는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의 장관감염증상을 보이는 경우 사·도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 * 발생규모 파악, 원인병원체와 감염원 규명, 전파경로 차단, 확산방지 (유행종식 및 유행재발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등 모든 활동 포함)
 -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인체 및 환경검체 확보 및 검사실시
 - (**방역조치**) 1군 감염병 또는 장관감염증 확진 시 감염병에 따른 소독조치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철저토록 안내

® 호흡기 감염병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 (의심증상자) 시·도 역학조사관을 통해 의심환자 분류요청 및 의심환자인 경우 국가격리병상 이송조치
 - * 의심증상자의 검체 확보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및 확진 실시
 - (접촉자) 시·도 역학조사관을 통해 접촉자 범위 선정 수동감시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외 감염병
 - (의심증상자) 협력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역학조사 실시
 - * 의심증상자의 검체 확보 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및 확진 실시
 - * 말라리아, 라임병, 수막구균성수막염, 황열, 디프테리아, 수두, 쿠도아충증은 질병관리본부로 검사의뢰
 - (격리치료)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중 홍역, 수두 등 공기전파질환으로 즉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협력 의료기관* 입원격리
 - * 단. 협력 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 (접촉자) 접촉자 파악 후 최대 잠복기까지 발병여부 능동감시
 - * 그 외 조치사항은 각 감염병 관리지침 준수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 (의심증상자)
 - · 시·도 역학조사관을 통해 의심환자 분류 및 협력병원 내 1인실 격리 및 검사* 실시하고. 양성판정 즉시 국가격리병상 이송조치
 - * 의심증상자의 검체 확보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및 확진 실시
 - · 항바이러스제 치료적 용법 투약 실시
 - *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치료적 투약가능
 - (접촉자) 시·도 역학조사관을 통해 접촉자 범위 선정 수동감시

◎ 생물테러 감염병*

- *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 (의심증상자) 시·도 역학조사관을 통해 의심환자 분류요청 및 의심환자인 경우 국가격리병상 이송조치
 - * 의심증상자의 검체 확보 후 질병관리본부 검사 의뢰 및 확진 실시
- (접촉자) 시·도 및 중앙 역학조사관을 통해 접촉자 범위 선정 및 접촉자 분류에 따른 감시
 - * 사람 간 전파 가능한 감염병(두창, 페스트, 에볼라열, 라싸열, 마버그열)의 경우

2) 감염병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결과 확인

O 의심증상자 관리대장 작성 관리

연번	조치 기관	이름	나이	성별	국적	종목명	연락처	국내* (대리인) 연락처	숙소	주요 증상	의심 질환명	검사, 조치	최종 결과

^{*} 국내 연락처가 있는 경우만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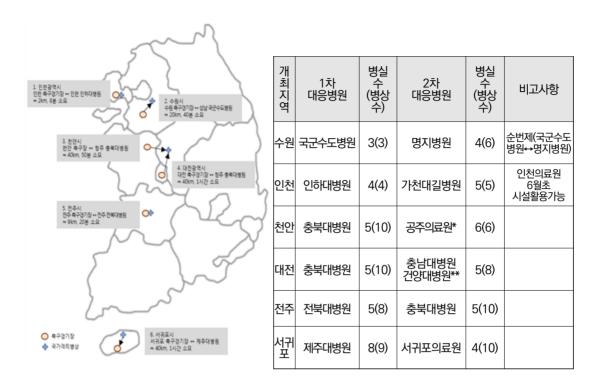
5.4. 행정사항

- 질병관리본부의 각 감염병 별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환자관리 실시
- 음압격리 등 국가격리병상에 입원이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지역 내 병실현황, 인근지역 내 이송가능 의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간 이송체계 등에 사전안내 실시
- 환자·의심증상자·접촉자 등이 대회필수요원인 경우 별도 격리가능 숙소 확보 및 관리

예시 1) 2017 무주 WTF대회 시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 현황

연번	구분	대응병원	병실수 (병상수)
1	1차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5(8)
2	2차	전북대병원	5(8)
3	3차	충북대병원	5(10)

예시 2) 2017 FIFA U20대회 시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 현황



- * 공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은 국고보조(기능보강사업) 음압병실 설치지방의료원
- ** 건양대병원은 대전 지역별거점병원으로 음압중환자실 보유 의료기관
 - 또한, 주소지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지역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전국 현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에 협조요청

6절 위기소통

6.1. 목적

○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및 낙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정확·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실시

6.2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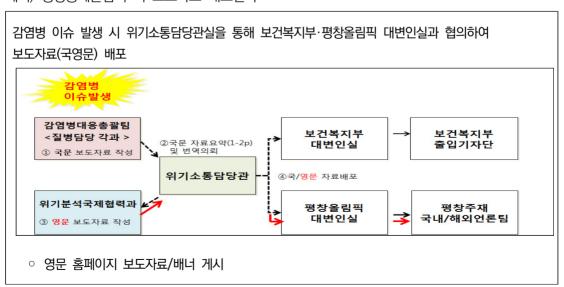
○ 보도자료, 취재지원 등을 통한 발생, 진행상황, 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예방 수칙 실천 등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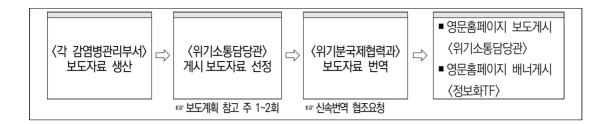
6.3. 주요내용

1) 보도계획

- 감염병 발생, 확진여부 및 결과 등 진행상황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가 협의를 거쳐 보도자료 배포
- ㅇ 또한, 외신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문 보도자료 작성 준비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보도자료 배포절차





2) 정보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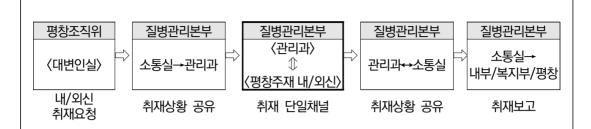
- 공중보건 위기 및 감염병 유행 현황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 관련 통계 등 사전 정보공개
 - 감염병 위험평가, 국내외 유행현황, 과거 동 기간 국내(지역별) 유행 질병, 과거 행사 개최 시 유행 감염병 등 관련 통계 사전공유, 과도한 불안감 및 낙관 방지, 감염병/생물테러 긴장 유지

3) 취재지원

○ 출입기자 및 현장언론(외신포함) 대상 행사 시 감염병발생 관련 취재 컨텍포인트 (분야별 담당 과장급 연락처 등) 안내. 취재지원 및 사전오보 방지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취재지원





* 출입기자 대상 취재안내 공지 문자 송부

〈문자시안예시〉

[질병관리본부]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 대응 관련 취재 안내 공지

질병관리본부(KCDC)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25일)에 혹시라도 발생 및 유입할 수도 있는 감염병과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 대응 등과 관련해서 문의하실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안내드리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시기 마닙니다.							
〈감염병 대응 총괄〉	(국가격리병상 관리 및 국가비축물자						
○○○ 감염병관리과장010-0000-0000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확보〉						
	○○○ 자원관리과장 010-0000-0000						
(입국자 등 검역관리 및 출입국자 감염병 예방 소통)							
○○○ 검역지원과장 010-0000-0000	〈감염병 진단관리〉						
	○○○ 감염병진단관리과장 010-0000-0000						
〈국내외 감염병 발생추이 등 자료분석 및 위험평가〉							
○○○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010-0000-0000	〈생물테러대응〉						
	○○○ 생물테러대응과장 010-0000-0000						
KCDC 위기소통담당관실 드림							

7절 예방홍보

7.1. 목적

- 국민 및 참가자에게 감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여, 개인위생관리를 통한 감염병 발생 최소화
- 군중모임 시 의료자원체계에 대한 정보공유로 환자 발생 시 확산 최소화

7.2. 기본방향

- 보도자료. 취재지원 등을 통한 발생. 진행상황. 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 ㅇ 대국민 및 참가자의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수칙 준수 등 긴장 유지

7.3. 주요내용

- 가) 예방홍보
 - ⓐ 대국민 대상 : 기관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6대 수칙

- 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② 충분히 익힌 음식먹기
- ③ 끓인 물 마시기
- ④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겨 먹기
- ⑤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는 소독 후 사용, 조리도구는 분리사용)
- ⑥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하지 않기



* 기침예절

- ①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가리지 않고 휴지로 입이나 코를 막기
- ②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 ③ 휴지가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④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모기물림방지

- ① 집 주변 고여있는 물 없애기
- 화분받침, 폐타이어, 인공용기 등 고인물 제거
- ②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 ③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 ④ 모기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 사용
- 용법, 용량,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
- ⑤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 ⑥ 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하고 땀 제거
- ⑦ 잠들기 전, 집안 점검하기
- 모기살충제, 모기향 등 사용 후 반드시 환기
- 구멍난 방충망 확인 및 모기장 사용

* 올바른 손씻기



ⓑ 숙박시설, 식당 대상

- 포스터. 리플렛 등 유인물 이용 홍보
- * 올바른 손씻기 및 식중독 예방 6대수칙

식중독 예방 6대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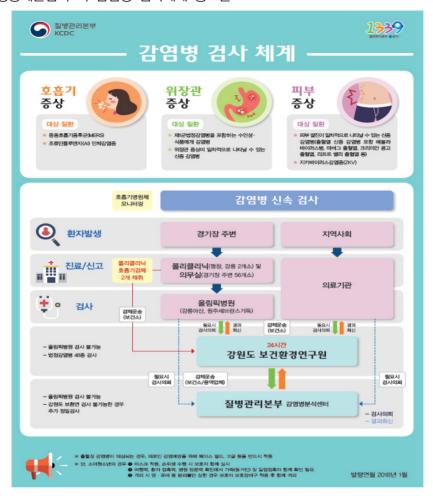
- ① 30초 이상 손씻기
- ② 육류 75℃, 어패류 85℃ 1분 이상
- ③ 물은 반드시 끓여 먹기
- ④ 채소 과일는 염소 소독 5분 담금, 흐르는 물 3회 세척
- ⑤ 60℃ 이상 조리물은 바로 식혀 5℃이하 보관
- ⑥ 조리기구는 채소, 육류, 어류 구분 사용

ⓒ 의료기관 대상

- 포스터, 리플렛 등 유인물 이용 홍보
 - * 해외유입 가능 감염병 등에 대한 진료, 진단, 신고 등에 대한 안내
-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의료기관 대상 대응체계 홍보물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감염병 검사체계 홍보물



예시 1) 2017 U-20시 예방홍보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섭취 등 감염병예방수칙 홍보물
- 메르스
 - 중동 출발 입국자(외국인) 대상 홍보
 - (기내방송)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시 신고 철저 안내
 - ∘ (게이트검역) 국내 도착시 1:1 검역 시행. 건강상태질문서 징수
 - (안내문 배포) 검역 시 메르스 바로알기 안내문 배포
 - 조직위를 통해 중동국가 대표단에게 유증상자(발열 및 호흡기 증상)의 숙소 관할 시·도 신고 협조 요청
 - * 의심환자로 분류될 경우의 격리 등 국내 대응절차도 함께 안내
 - 관할 보건소에서 지정/협력병원 대상 메르스 선별진료 및 신고 안내문 재강조

예시 2) 평창동계올림픽 시 예방홍보

- 우리나라 감염병관리제도 안내 및 감염병예방수칙 홍보
 - (조직위) 평창 조직위 주관 홍보물, 홈페이지 등 소통채널(내국인/외국인)에 감염병 관련 정보 (홈페이지, 1339, 대응수칙 등 필수정보) 포함, 홍보협력 강화
 - (대국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 국민직접 소통채널을 활용해 감염병 예방수칙(손씻기·기침예절, 호흡기, 수인성감염 예방수칙 등), 감염병검사체계 등 질병관리본부 대응체계 안내
 - * 질병관리본부 국/영문 홈페이지 감염병, 평창관련 정보 현행화
 - (개최지역 숙박시설·식당) 평창, 정선, 강릉 일대에 포스터 및 리플렛 배포
 - * 포스터 3종(식중독 예방 6대수칙,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손소독제 배치
 - (외국선수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우리나라 검역제도 등 안내
 -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헬스가이드에 수록되어 각국 배포
 - (관광객) 강원도 내(평창, 정선, 강릉 일대) 증상발생시 이용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위치, 감염병 예방수칙 등 홍보



제5장 환경 관리

□ 목적

○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 식품 등의 환경관리로 감염병 발생 예방

□ 기본방향

- O 식품위생, 수질관리, 화장실, 행사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위생 등 적절한 관리조치
- 환경 보건 및 식품안전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통합 환경 보건감시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0 대상

식품위생, 수질(수중경기, 생활용수, 레크레이션용 포함), 숙소(호텔, 선수촌 등), 장애인시설, 운송(버스, 지하철, 기차 등), 화장실, 폐기물, 해충방제, 냉각탑 등

- (수질) 식수공급원(음식 준비 구역, 생수 준비 공장 등), 레크레이션 용수(수영장, 조정, 웨이크보드 등 수상경기가 열리는 호수, 강), 생활용수(목욕, 양치 등)
- (식품) 케이터링 업체 외 행사장 내외 식당, 카페, 노점상 등의 공급업체에 대한 허가 시스템 구축운영,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검식 실시, HACCP운영현황
- (화장실) 남녀 별도 화장실* 제공, 적절한 환기, 덮개가 있는 휴지통 제공, 지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건설
- (손세정설비) 수압으로 흐르는 물(상수도 또는 염소처리된 물), 비누, 종이타월 등 건조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특히 화장실 근처, 음식 서비스 지역근처에는 필수적으로 설치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법률에 따른 공중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기준에 맞춰 관리
- 현장평가 및 감시
 - 환경 보건, 위생 및 식품 안전 전문가 자문
 - 참석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숙소, 급식시설 등)를 선정하고 사전 검사를 수행

특히 호텔, 식품공급업체, 식당, 공공위생시설 및 수도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 예시)숙박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 노로바이러스 검사, 물, 식음료 등에 대한 식중독원인 병원체 검출여부 검시 및 검사

0 비삿대응

- 각종 감시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환경 및 식품위생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특히,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환경 및 식품 위생부서가 협력하여 조사 시행

예시) 평창동계올림픽 시 노로바이러스 대응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앙-지방-조직위원회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 수립·시행
 - (질병관리본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 및 예방수칙 홍보, 폴리클리닉(선수촌 의무실) 및 경기장/비경기장 의무실 감시체계 올림픽 운영요원 숙박시설 설사감시체계, 강원지역 보건 의료기관 집단설사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조직위·강원도 등과 협조하여 환자 격리 및 밀접 접촉자 증상 모니터링 실시 등
 - (식약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임원단, 심판, 운영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숙박시설에 전담 검식관을 배치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 강릉·평창·정선지역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등
 - (환경부) 올림픽 관계 숙박시설 중 지하수·전용상수도, 지하수 사용 음식점, 정수장 등에 대하여 소독 시설 점검 및 수질관리 실시 등
 -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속초, 삼척 소재 숙박업소에 대한 소독 및 위생관리, 음식점(조리 종사자 포함) 위생 점검, 전용상수도·지하수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및 관리 강화 등

□ 행정사항

- 행사 전에 반드시 환경부분 점검 및 조치사항을 완료하고, 식품위생은 행사 중에 감시체계 운영 및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 대응
- 행사 후 환경관리 평가 실시
 - * 예)행사장의 환경오염. 유기용매 사용에 따른 모기 개체수 등 변화 등



제6장 감염병 대응 평가

□ 목적

○ 해당 군중모임의 감염병 대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필요사항 분석 등을 통해 향후 군중모임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 기본방향

- 군중모임 개최 전 준비, 행사 중, 종료 후에 실시된 각종 감염병대응 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대처사항을 재정비하여 향후 개최되는 군중모임행사 시 해당 사항이 재반복하지 않도록 방지
- 군중모임마다 감염병 대응 후 그 결과 및 산출물을 백서 및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타 군중모임행사를 계획할 때 감염병대응에 참고 및 보완

□ 주요내용

- (a) 감시시스템
 - 기존 시스템의 장단점 파악을 통한 개선으로 신속 신고·보고여부
 - 전년대비 개최 지역 감염병 발생현황 비교분석

(b) 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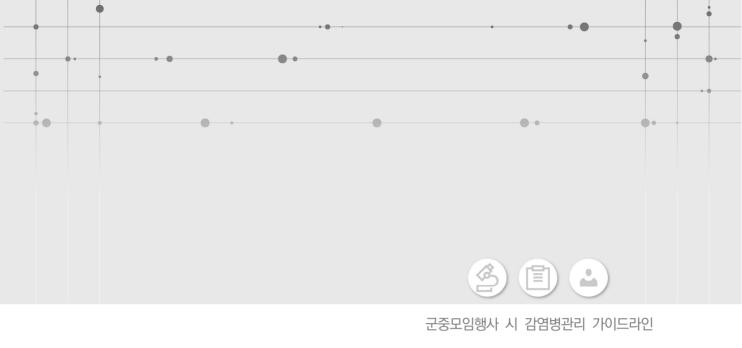
- 사전에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계획 및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계기관 간 역할에 대한 이해 등 협조체계 이행여부
- 위험평가 실시 여부
- 전담조직·인력 편성여부 및 정확한 업무분장 실시
- ⓒ 감염병예방 준수여부
 - 사전 예방접종율. 개최 지역 내 감염병발생 현황. 예방수칙 준수율 등

(d) 대응

- 입국자 검역 시 유증상자 조치사항 분석
- 감염병 발생시 조치사항 분석
- @ 실험실검사
 - 감염병 의심화자 발생 시 신속검사 체계 운영 여부
 - 검사결과 공유 및 보고체계 가동 여부
- (f)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
 - 관계기관 간 위기소통체계 및 시행여부
- ® 환경보건(수질, 식품위생 등)
 - 환경개선을 통해 물 및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감소, 생수(포장된 음료수) 공급, 조리종사자에 의한 감염병발생 감소 등
- (h) 법률, 규정, 정책
 - 식품 및 물에 대한 법률 준수
 - 별도로 행사관련하여 수립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 준수

□ 행정사항

○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대응계획, 매뉴얼, 홍보자료, 감시분석보고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백서 등 발간



부 록

붙임1

검역 업무

□ 메르스 대응 절차(요약)

① 유증상자 인지 및 검역조사 실시

- ① 유증상자에게 수술용마스크 착용시키고 격리 실로 이동
- ② 유증상자 조사·분류표 작성 등 검역조사 실시
- ③ 의심환자 분류 요청 필요 시 역학조사관에게 인계

2 의심환자 분류 요청 불필요시

∘대상자에게 보건교육 후 귀가조치

③ 역학조사서 작성 및 의심환자 분류

(역학조사관) 메르스 역학조사서, 접촉자 조사 및 의심환자 분류

의심환자 아님

④ 의심환자 아닐 경우 조치

- · (검역관)
 - 잠복기 동안 주의사항 안내 후 귀가 조치
 - 유증상자 명단 통보
 - → 질병관리본부 및 거주지 관할보건소
- (거주지관할보건소)

잠복기 14일 동안 수동감시

5 의심환자일 경우 조치

5-1 의심환자 신고 및 관리

- (검역관)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지체없이 보고 (유선) 및 음압병상 배정 요청
 - * 긴급상황실로 메르스 역학조사서, 건강상태 질문서 전송
 - 운송수단(항공기 등) 소독명령 등 행정조치
 - * 항공사 직원인 경우 항공사 통보
 - 항공사(수속대행), 출입국관리시무소(대리수속), 세관(출장수속), 공항공사(계류장 이용 등) 협조 요청

5-2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 (검역관) 「메르스 격리입원 검사 절차 안내문」 제공 및 설명

5-3 병원 이송 및 환자 인계

- · (검역관) 이송병원에 메르스 역학조사서 팩스 전송 및 환자 도착시점 사전 유선 알림
- * 메르스 역학조사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여권(신분증) 준비
- ∘ (의료기관)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 ∘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신고접수

5-4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검역소)
 - 접촉자 조사 및 명단 통보
 - → 질병관리본부(위기대응총괄과·검역지원과) 및 시·도
 - 접촉자 대상 안내(SMS 발송)
- * 의심환자가 경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접촉자 조사 및 명단만 확보(SMS 미발송)

6 의심환자 검사

- · (검체종류) 2종 (하기도·상기도)
- · (검사항목) 메르스 및 호흡기바이러스(8종) 유전자검사
- · (검사기관) 국립검역소(지역거점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8 환자일 경우 조치

8-1 확진환자 관리

∘ (격리병원) 확진환자 격리 치료 및 관리 지속

8-2 접촉자 역학조사 및 관리

- · (검역소) 접촉자 추가조사 후 시·도로 명단 통보
- (시·도) 접촉자 재분류(밀접/일상접촉자), 관리 상황 점검
- · (거주지관할보건소) 접촉자 격리, 능동감시 및 관리 등

환자 아님

7-1 의심환자 격리 해제

- · (검사기관) 검역소에서 검사한 경우 검 사결과 입력
-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의료기관으로 검사결과 통보, 검사결과 및 주의사항 등 안내 후 격리해제 조치
- (격리의료기관) 보건소 조치사항에 협조

7-2 접촉자 수동감시 해제

-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 검사결과 음성 및 수동감시 해제* 및 SMS 안내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제

□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 라싸열) 대응 절차(요약)

유증상자 인지 및 검역조사 실시

- 유증상자에게 마스크 착용시키고 격리실로 이동
- 에볼라(라싸열) 입국자 안내문 배부
- 유증상자 조사분류표 작성 등 검역조사 실시 역학조사 대상자로 분류 시 역학조사관에게 인계

역학조사관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 없는 경우

① 역한조사 실시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배부, 에 볼라(라싸열) 문진표, 접촉자 조사양식 작성 및 의심화자 분류

② 의심환자일 경우 조치

2-1 의심환자 관리

- · (검역관) 긴급상황실로 지체없이 보고(유선) 및 음압병상 배정 요청
- * 긴급상황실로 에볼라(라싸열) 문진표, 건 강상태 질문서 팩스 전송

2-2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 (검역관) 격리 및 입원 검사 설명, 예약 교 통편 확인

2-3 병원 이송 및 환자 인계

- · (검역관) 이송병원에 에볼라(라싸열) 문진표 팩스 전송 및 출발 전후 환자 도착시점 유선 알림
- * 에볼라(라싸열) 문진표 및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여권(신분증) 준비

2-4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접촉자 조사 및 명단 통보
 └─질병관리본부(위기대응총괄과·검역지원과)
 및 시도
- 접촉자 대상 안내(SMS 발송)

① 역학조사 실시

(검역관·공중보건의)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배부, 에볼라(라싸열) 문진표, 접촉자 조사양 식 작성

2 의심환자 분류 요청

- · (검역관) 긴급상황실로 지체없이 보고(유선) 역학조사관에게 의심환자 분류 요청
- * 긴급상황실로 에볼라(라싸열) 문진표, 건강태질문서 팩스 전송

③ 의심환자일 경우 조치

3-1 의심환자 관리

∘ (검역관) 긴급상황실에 음압병상 배정 요청

3-2 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

· (검역관) 격리 및 입원 검사 설명, 예약 교 통편 확인

3-3 병원 이송 및 환자 인계

- · (검역관) 이송병원에 에볼라(라싸열) 문진표 팩스 전송 및 출발 전후 환자 도착시점 유선 알림
- * 에볼라(라싸열) 문진표 및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여권(신분증) 준비

3-4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접촉자 조사 및 명단 통보
 나질병관리본부(위기대응총괄과·검역지원과)
 및 시도
- 접촉자 대상 안내(SMS 발송)

□ AI 대응 절차(요약)

유증상자 인지 및 검역조사 실시

- 유증상자에게 마스크 착용시키고 격리실로 이동
- 유증상자 조사·분류표 작성 등 검역조사 실시
- 역학조사 대상자로 분류 시 역학조사관에게 인계

역학조사관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 없는 경우

① 역학조사 실시

- · (역학조사관) AI 역학조사서, 접촉자 조사양식 작성 및 의심환자 분류
- (검역관) 긴급상황실로 지체없이 유선 보고
- * 긴급상황실로 AI 역학조사서, 건강상태질문서 팩스 전송

② 검체 채취 및 의심환자 격리, 검사의뢰(실시)

- · (역학조사관) 격리공간에서 호흡기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검역소 격리시설(실)에 의심환자 대기
- ∘ (검역관) 검체 운송 및 검사의뢰(실시)
- * 지역거점검사센터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③ 확진환자일 경우 조치

3-1 확진환자 이송 준비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 · (검역관) 긴급상황실로 지체없이 보고(유선) 및 음압병상 배정 요청
- · (검역관) 이송병원에 여권사본, AI 역학조사서 팩스 전송

① 역학조사 실시

(검역관·공중보건의) AI 역학조사서, 접촉 자 조사양식 작성

② 의심환자 분류 요청

- · (검역관) 긴급상황실로 지체없이 유선 보고 역학조사관에게 의심환자 분류 요청
- * 긴급상황실로 AI 역학조사서, 건강상태 질문서 팩스 전송

③ 검체 채취 및 의심환자 격리, 검사의뢰(실시)

- (검역관) 격리공간에서 호흡기검체 채취후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검역소 격 리시설(실)에 의심환자 대기
- (검역관) 검체 운송 및 검사의뢰(실시)
- * 지역거점검사센터 또는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

- 3-2 병원 이송 및 환자 인계
- ·(검역관) 환자 출발 시·도착 전 유선 알림
- * AI 역학조사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여권 (신분증) 준비
- 3-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접촉자 조사 및 승객·승무원 전원 명단 통보
 - 나 질병관리본부(위기대응총괄과·검역지원과) 및 시도
- ∘ 승객·승무원 전원 (SMS 발송)

4 확진환자일 경우 조치

- 4-1 확진환자 이송 준비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 · (검역관) 긴급상황실로 지체없이 보고 (유선) 및 음압병상 배정 요청
- · (검역관) 이송병원에 여권사본, AI 역학 조사서 팩스 전송
- 4-2 병원 이송 및 환자 인계
- ∘ (검역관) 환자 출발 시·도착 전 유선 알림
- * AI 역학조사서 및 건강상태질문서 사본, 여권(신분증) 준비
- 4-3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 접촉자 조사 및 승객·승무원 전원 명단 통보
- → 질병관리본부(위기대응총괄과·검역지원과) 및 시도
- ∘승객·승무원 전원 (SMS 발송)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현황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58개국, 오염인근지역: 1개국〉

('18. 7.1.기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도무이프리에자	중동호흡기	폴리오
구	분	국가	크네너		8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ㅎㅎ 오급 기 증후군	크 니 エ
•	_	(58개국)	(15)	(1)	(42)	(1)	(3)	(7)
	1	Afghanistan						0
아 시	2	China (11개 성시)				0		
아	3	India	0					
	4	Oman					0	
중동	5	Pakistan						0
동	6	Philippines	0					
10	7	Saudi Arabia					0	
10 ער	8	Syria						0
개 국	9	United Arab Emirates					0	
	10	Yemen	0					
	1	Angola	0		0			
	2	Benin			0			
	3	Burkina Faso			0			
	4	Burundi			0			
	5	Cameroon			0			
	6	Central African Republic			0			
	7	Chad			0			
아	8	Cote d'Ivoire			0			
프 리 카	9	Democratic Republic of Congo(DRC)	0		0			0
35	10	Equatorial Guinea			0			
개 국	11	Ethiopia			0			
국	12	Gabon			0			
	13	Gambia			0			
	14	Ghana			0			
	15	Guinea			0			
	16	Guinea Bissau			0			
	17	Kenya	0		0			0
	18	Liberia			0			
	19	Madagascar		0				
	20	Malawi	0					

_	ш	국 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	폴리오
7	분	(58개국)	(15)	(1)	(42)	인체감염증 (1)	증후군 (3)	(7)
	21	Mali			0			
	22	Mauritania			0			
	23	Mozambique	0					
	24	Niger			0			
	25	Nigeria	0		0			0
	26	Republic of Congo			0			
	27	Sierra Leone			0			
	28	Senegal			0			
	29	Somalia	0					0
	30	South Sudan	0		0			
	31	Sudan	\circ		\circ			
	32	Togo			\circ			
	33	Uganda	0		0			
	34	Tanzania	\circ					
	35	Zambia	0					
	1	Argentina			0			
	2	Bolivia			0			
	3	Brazil			\circ			
아	4	Colombia			0			
메	5	Ecuador			0			
리	6	French Guiana			0			
카	7	Guyana			0			
4.0	8	Panama			\circ			
13	9	Paraguay			0			
개 국	10	Peru			0			
-	11	Suriname			0			
	12	Trinidad and Tobago			0			
	13	Venezuela			\circ			

^{*} 중국 11개 성·시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

※ 검역감염병 오염인근지역 지정

◈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 '카타르'

: '카타르'는 메르스 원발생지역(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접지역이며, 국내 직항기 운항 및 국내 입국 시주요 경유 국가임에 따라 검역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입국자 검역조치는 오염지역과 동일)

^{**} 중국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규모 등 특성에 따라 성(省)시(市)로 지정될 수 있음



▶ 일일 검역대응 현황보고 서식

① 입국자 총괄 현황

구분	참가국 수	입국자 수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입국당	시 증상	유증상자 조치사항		
				유	무	의심환자	보건	시도
				Ť		분류	교육	통보
누계								
금일								

② 입국자 검역관리

① 일자별 입국자 검역 현황

입국		입국자	건강상태	입국 증	당시 상	유증성	해당		
입국 일자	참가국	수	질문서 징구	유	무	의심환자 분류	보건교 육	시도 통보	해당 검역소

② 입국자 중 유증상자 현황

연 번	입국 일	편명	국적	성명	성 별	연 령	증상정보	약 복용	주소(숙소) (시도, 시군구)	의심환자 분류 여부
1										
2										

붙임2

감염병의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체계

	=10.111		역학조	사 주관	역학조사		
구분	감염병	신고·보고	개별	유행	시기	주관부서	
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지체 없이 신고·보고	시·군·구	아래의 유행역학 조사 기준에 따름	지체 없이	감염병 관리과	
	디프테리아,폴리오 홍역, 풍진 일본뇌염, 파상풍	지체 없이	중앙 시·군·구 시·도	중앙 시·도 시·도	지체 없이 지체 없이 3일 이내	감염병	
2군	백일해, 급성B형간염, 폐렴구균,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신고·보고	시·군·구	시·도	3일 이내	감엄명 감시과	
	수두 ¹⁾ , 유행성이하선염 ²⁾		시·군·구	시·군·구	3일 이내		
	결핵 ³⁾		시·군·구	시·군·구 (시·도, 중앙)	7일 이내	결핵에이즈 관리과 결핵조사과	
3군	레지오넬라증	지체 없이 신고·보고	시·도	시·도 (중앙)	3일 이내	감염병 관리과	
	수막구균성수막염		시·군·구 ⁵⁾	시·도	지체 없이		
	탄저		시·도	시·도 (중앙)	지체 없이	생물테러 대응과	
4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 감염증 바이러스성출혈열	지체 없이 신고·보고	시·도	시·도 (중앙)	지체 없이	위기대응 총괄과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페스트			(56)		생물테러 대응과	
지정	급성호흡기감염증 ⁴⁾	표본감시, 7일 이내 신고, 주 1회보고	-	아래의 유행역학 조사 기준에 따름	-	감염병 관리과	
기타	수막구균성수막염		시·군·구 ⁵⁾	시·도	지체 없이		

[※] 그 밖의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 역학조사 주관이 "중앙"이라 함은 관할 시·군·구 및 사도에 중앙(주관부서)이 직접 지원함을 말함

- ※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주관하는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 중 사망, 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 사례인 경우 임상경과, 주치의 의견, 사망원인판단, 역학조사반 의견 등 심층역학조사는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실시
- 1) 2) 수두/유행성이하선염: 개별 사례 역학조사는 수두(폐렴, 뇌염 등), 유행성이하선염(뇌수막염, 고환염) 등 합병증 또는 사망이 발생한 사례에 한하여 시군구 역학조사반에서 실시
- 3) 결핵 : 도말양성환자의 개별역학조사서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실시, 유행은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중점 사례기준에 따름
- 4) 급성호흡기감염증 : 산후조리원 등에서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 5) 1명의 환자가 발생한 개별사례라도 집단생활자(기숙사, 군대 등) 중 발병되어 집단발병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시도가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시행

□ 유행 역학조사 실시 기준

(1군 감염병 및 장관감염증(수인성·식품매개질환), 급성호흡기감염증)

구분	유행 역학조사 실시 기준
중앙	○ 시·도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긴급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사도	○ 시군구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관할 시군구에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급성호흡기감염증 유행의 경우
시·군구	○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급성호흡기감염증 유행



·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1) 환자관리

감염병명	조치사항
	○ 신속한 환자발견 및 의심병원체 확진검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
구인상식품메게임임성	○ 환자격리 및 주변 환경 소독
	○ 해당 감염병 정보제공 및 보건교육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접촉 제한 및 마스크 착용
	○ 신속한 환자발견 및 의심병원체 확진검사
호흡기 감염병	○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 파악
	○ 환자격리 및 주변 환경 소독
	○ 해당 감염병 정보제공 및 보건교육
	○ 환자 발생 시 결핵 신고 및 사례조사 실시
	○ 전염성 환자인 경우 2주간 복약확인, 근로자 또는 학생은 전염성 소실 시
결핵	까지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 조치
	○ 결핵 치료 및 보건교육 실시
	○ 가족 및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시행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발견
	○ 의심환자 국가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검사 시행
	○ 접촉자 조사 및 수동감시 시행
	○ 의심환자 격리해제 및 교육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발견
	○ 의심환자 국가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에볼라바이러스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검사 시행
	○ 접촉자 조사 및 능동감시 시행
	○ 의심환자 격리해제 및 교육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의심환자 발견 및 격리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확진검사 시행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 국가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 항바이러스제 치료적 용법 투약 실시
	○ 접촉자 조사 및 수동감시 시행

2) 접촉자관리

감염병명	접촉자관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밀접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 식품업종시자, 수용시설 종시자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음식취급, 보육, 환자간호 등 금지 ○ A형간염의 경우 2주 이내 예방접종 또는 면역글로불린 접종 실시 ○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호흡기감염병	□ 밀접접촉자는 마지막 폭로가능 시점부터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결핵	 ○ 접촉자조사 실시 - 결핵검사 : 대상자 전원 흉부 X선 검사(필요시 추가 흉부 CT검사) 시행 *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시행 - 잠복결핵감염검사 : 대상별로 해당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 - 접촉자조사 대상 전원에 대해 추구 흉부 X선 검사 실시 등 추구관리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치료 실시(치료 동의자에 한함) 및 추구관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 환자 발생 집단 내에서 유행종료 시점까지 추가환자 발생 감시○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 환자 접촉자 중 면역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 또는 노출 후 예방요법 시행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노출일로부터 14일 간 수동감시 실시, 의심환자 격리해제 시 종료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노출일로부터 14일 간 격리 및 능동감시(1일 1회 이상 전화) 실시 ○ (밀접접촉자)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확인한 자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의료기관내 공간(응급실,진료실,처치실,검사실,중환자실,병실,병동 등) *교통수단 공간(버스, 기차, 항공기 등), 거주시설 공간(고시원, 기숙사, 요양시설 등), 공용시설(식당, 체육관, 찜질방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일상접촉자) 확진환자와 동일한 시간 및 공간에서 활동한 자 중 의심 또는 확진 환자의 유증상기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감 염노출 또는 접촉을 배제할 수 없어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여 역학 조사관 등이 판단한 자
에볼라바이러스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의심환자의 1차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 후 2차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 해제 ○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노출일로부터 21일간 능동감시 (1일 2회 능동적 확인) 실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최종노출일 이후 10일간 모니터링, 첫 노출 후 48시간 이내 항바이러 스제 투여(1일2회권장), 일회성노출시에는5일간투여하고지속적노출(가 족내 접촉)인 경우 10일간 투여

붙임 4

감염병 별 격리기준

감염병명	격리 입원기준	격리 입원 기관	입원치료비 지원
수인성·식품 매개감염병	○ 각 감염병별 격리해제의 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격리치료 ○ 입원치료 대상 : 제1군 감염병(콜레라,장티 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A형간염)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따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협력의료기관 (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제42조 -내국인 (지방비부담) -외국인 (국고100%)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 감염병 격리기준에 따라 격리치료 ○ 입원치료 대상 : 홍역	협력의료기관 (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제42조
결핵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 비순응 환자	협력의료기관 (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결핵예방법 제20조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 의심환자 분류 시(역학조사관 판단 분류) 지체 없이 국가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시행 이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경증 호흡기증상인 의심 환자는 1회 검사 결과 음성 후 격리해제 이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중증 호흡기증상인 의심환자는 2차 검사 결과 음성 후 격리 해제 이 확진환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지역별 거점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제42조 -내국인 (지방비부담) -외국인 (국고100%)
에볼라 바이러스병	○ 의심환자 분류 시(역학조시관 판단 분류) 지체 없이 국가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시행 ○ 의심환자의 경우 1차 검사 결과 음성이면 증상발현시점 72시간 이후에 2차 RT-PCR 실시하여 음성이명 격리 해제하고, 능동감시만 유지 ○ 확진환자는 증상이 3일간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RT-PCR 에서 음성이면 격리해제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지역별 거점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제42조 -내국인 (지방비부담) -외국인 (국고100%)
동물인플루엔 자인체감염증	○ 의심환자 분류 시(역학조사관 판단 분류) 지체 없이 격리치료 ○ 검사결과 양성의 경우 국가격리병상 이송 및 격리 시행	협력의료기관 (단, 협력의료기관 내 입원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1인실 입원 가능한 시설에 격리치료), 국가 지정격리병원 및 지역별 거점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제42조 -내국인 (지방비부담) -외국인 (국고100%)

붙임 5

자원관리

□ 국가격리병상

- O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18년 12월까지 16개 시도 29개소에 음압격리병상 199개 및 일반격리병상 338개 구축 예정(참고 1)
 - 개최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대한 행사 전 운영 점검 및 환자 발생 시 이송 계획 수립(참고 2)
 - → 행사 규모에 따라 평시 대기 병상 규모를 20%에서 100%로 확대 여부 결정
 - → 중환자. 소아 등 특수 환자 입원치료를 고려한 환자 이송 계획 마련
 - 개최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부족 시를 가정한 추가 확보 계획 수립(참고 3)
 - → 개최지 지역별 거점병원(16개 시도, 31개소, 중환자 음압격리실), 인근 시도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으로의 환자 배분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 지자체 주관 행사의 경우 행사 기간 중 메르스 의심환자 등 격리입원치료를 위한 대기 병상 유지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와의 사전 협의 실시

□ 격리외래

- 확진 환자 발생 시 접촉자 등 외래 진료에 대비한 계획 마련
 - 16개 시도에 71개 지역별 거점병원에 격리외래실 설치(참고 4)
 - 음압텐트는 의료기관 285개소에 340대. 지자체(보건소) 62개소에 62대 보유 중
 - → 개최지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음압텐트 점검 및 인근지역 음압텐트 보유 현황 파악
 - ※ 지자체 주관 행사 시 타 지역 음압텐트 보유 정보 요청 및 동원은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에 협조 요청

□ 특수구급차

- 0 개최지 보건소 보유 특수 구급차 파악
- O 협력의료기관 보유 구급차 현황 파악
- ㅇ 각 지역 소방본부 보유 구급차 현황 파악 및 협조요청(참고 5)

□ 응급헬기

○ 개최지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헬기 현황 파악 및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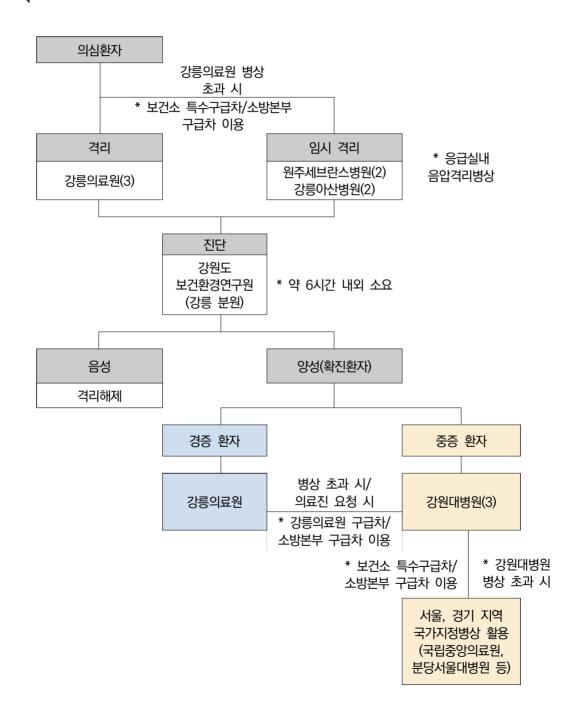
□ 의무실 및 협력의료기관

- 행사장 내 의무실 확보 및 근무 인력, 교육 등 실시
- O 협력의료기관 지정 및 협력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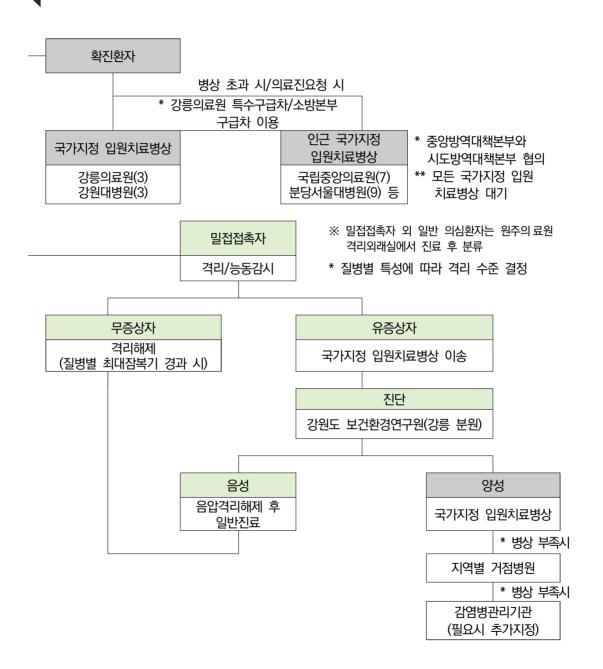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상 확충 후 병실 현황

				음압	일반	<u></u>	
연번	사도	병원명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비고
1		국립중앙의료원	4	5*3	1	2*4 3*1 6*5	
2	서울	서울대병원	7	_	_	5*2	
3		서울의료원	10	_	_	_	
4		중앙대병원	4	_	_	_	
5		한일병원	3	_	_	_	
6		국군수도병원	8	_	_	_	
7	경기	명지병원	7	2*2	1	5*3 4*1	
8]	분당서울대병원	9	-	_	_	
9		인천시의료원	7	-	_	_	
10	인천	인하대병원	4	_	_	_	
11]	가천대길병원	5	_	_	_	
12	7101	강릉의료원	1	2*2	_	5*4	
13	강원	강원대병원	3	_	_	_	
14	대전	충남대병원	8	_	_	_	
15	충북	충북대병원	2	3*2 2*1	_	5*5	
16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7	_	3	3*5	
17		전북대병원	4	4*1	6	5*1	
18	전북	원광대병원	3	_	_	_	
19	광주	전남대병원	7	_	_	2*2 4*4	
20]	조선대병원	5	_	_	_	
21	전남	국립목포병원	2	4*2	_	4*10	
22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1	2*2	-	7*4 5*1	
23	대구	대구의료원	1	2*2	_	2*2 3*6	
24	"'	경북대병원	5	_	_	_	
25	울산	울산대병원	5	_	2	2*3 6*2	
26	경남	경상대병원	1	2*3	_	4*2 5*4	
27	부산	부산대병원	5	_	-	4*4 5*1	
28		부산시의료원	5	_	_	_	
29	제주	제주대병원	7	2*1	_	2*4	
		 실 총계	140	21(59)	13	80(325)	
				161(199)	930	(338)	

평창올림픽 대비 신종감염병 환자관리 체계(예시)



올림픽 기간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관리 체계(예시)



※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이외 일반 의심환자는 지역별 거점병원 격리외래실(원주의료원) 및 선 별진료소 11개소에서 진료 후 조치

지역별 거점병원 중환자 격리외래 현황 (2018.1월 기준)

	시·도	의료기관수	격리외래 진료실 수	비고
1	서울특별시	3	7	
2	부산광역시	5	10	
3	대구광역시	5	11	
4	인천광역시	5	12	
5	광주광역시	2	4	
6	대전광역시	2	4	
7	울산광역시	2	4	
8	경기도	15	36	
9	강원도	2	6	
10	충청북도	3	8	
11	충청남도	5	16	
12	경상북도	5	10	
13	경상남도	7	15	
14	전라북도	4	9	
15	전라남도	5	10	
16	제주특별자치도	1	3	
	계	71	165	

^{※ 69}개 의료기관 161개 격리외래 진료실 활용 가능 (2018년 1월 기준)

각 지자체 소방본부 특수구급차 현황 (2017.12월 기준)

		119구급대(차	량, 대)	
구 분		2017년 12월말	현재 기준	
	계	특수구급차 (운영 중)	음압구급차	예비구급차 (폐차대기)
총 계	1484	1384	5	95
서 울	154	149	2	3
부 산	71	57	0	14
대 구	55	47	0	8
인 천	74	62	0	12
 광 주	36	29	0	7
 대 전	32	32	0	0
울 산	28	24	0	4
 세 종	10	10	0	0
 경 기	240	237	3	0
 강 원	119	119	0	0
충 북	75	64	0	11
	116	94	0	22
 전 북	77	75	0	2
 전 남	95	94	0	1
경 북	132	130	0	2
 경 남	114	107	0	7
제 주	31	30	0	1
창 원	25	24	0	1

※ 출처 :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119구급과 (2017.12월 기준)

붙임 6

군중모임행사 대비 감염병 관리 시스템(예시)

○ 방문자 관리(차트관리, 환자이름, 일자별 등 검색 기능 추가 필요)											
작성자 ·	성명 :	진료소	명:	연	락처 :		작성일	ļ:	년	월	일
1. 일반/	나항 -										
1.1 성 명		1.2 생년	크월일	년	월 일	1.3 연락처		계 :)		
1.4 성별	○남 ○여	1.5 연형	편O	만	세	1.6 국적	0 =	국내 국외(국가당	령:)		
1.7 숙소	▶ 주소 :				1		'				
	①○ 선수 ②○ 임원단(감독, 코치 등) 종목명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프리스타일스키 □노르딕 □스키점프 □스노보드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쇼트트렉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1.8 직업	1.8 식업 ③○ 요식업종사자(장소명 :)										
	④○ 자원봉사	내업무명 :)						
	⑤○ 관광객										
	⑥○ 기타(직업	명 기재)								
2. 임상 증상 2.1 최초 증상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오전 ○ 오후)											
2.2 기본 활략		체	<u></u> 온 :	℃		· · · · · · · · · · · · · · · · · · ·	<u> </u>		— 17		
2.2 / [2	-i o-t	혈	압 : 있음	/ mi 없음	m Hg(최고/: 모름	초(저) 		있음	없음	·	모름
2.3 증상 및	징후 2.3 2.3 2.3	1 발열 (최 2 오심 3 구토 4 설사 .4.1 양상:	○ 12 체온: ○ ○	0 0	±= ○ ℃) ○ ○	2.3.6 근 2.3.7 기 2.3.8 콧 2.3.9 오 2.3.10 ·	침 물 한 부상	0 0 0 0	0		O O O
		.4.2 최고 홍		/2	4시간	2.3.11	기타	0	0		0
	2.3	5 두통	0	0	0	(기술)
3. 조치/	나항 및 결과										
3.1 검사 실/	○ 검체종류 ○ 검사결과 진단명 :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호흡기감염병 □ 예방접종대상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추가										
3.2 조치사항			○ 기타	 의료기관명 :	:		, 전원일	: 년	월		일)
3.3 처방사항			약물명	기재							
	3.4 결과 (경기종료 전 추적관리) 치료중 ○ 증상호전 ○ 치료완료 ○ 진단변경(진단명 :)										

- ※ 대장형식으로 별도작성 없이 차트 작성에 따라 자동 취합되고, 조회가능
- 방문자 진료현황

연번	진료 소명	이름	나이	성별	국적	종목명	연락처	국내* (대리인) 연락처	숙소	주요 증상	의심 질환명	검사, 조치	최종 결과

- 감염병 의심자 및 환자관리

		1	환자 분류				치료 결	과	
	구분		확진	의심	계	치료중	호전	완료	진단
		계 	712	-1'6	111	八五〇	보건	[건표 	변경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진료소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국제행사관리 메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국제대회선수관리 메뉴활용

국제대회선수관리-등록, 업데이트(1) - 시군구(주사용자), 시도, 질본 모두 입력, 조회가능



국제대회선수관리-등록, 업데이트(2) - 시군구(주사용자), 시도, 질본 모두 입력, 조회가능



국제대회선수관리-등록, 업데이트(3) -시군구(주사용자), 시도, 질본 모두 입력, 조회가능



국제대회선수관리-등록, 업데이트(4-1) - 시군구(주사용자), 시도, 질본 모두 입력, 조회가능



국제대회선수관리-등록, 업데이트(4-2) -시군구(주사용자), 시도, 질본 모두 입력, 조회가능







방문자현황관리 조회



방문자현황-증상별 현황





감염병대응 일일상황보고(예시)

기관명, 일시

1. 입국자 검역

ㅁ 입국자 현황

일자	참가 국가	계

ㅁ 오염국가 검역 현황

(단위 : 명)

일	ネトフレ ユフレ	+71 - 71 - 71		성별		건강상태질문서		당시 남유무	유증상자 조치사항(건수표시)		
자	자 참가 국가 계	남	여	0	×	0	×	검체 채취	보건 교육		

*오염지역:

2. 감염병발생감시 및 대응

- ㅁ 감염병감시
 - 1) 장관 및 급성호흡기 표본감시

일시		감염병명	발생건수(건)
	누계		
051001	장관감염증	세부감염병	
0월0일	급성호흡기증후군	세부감염병	
	인플루엔자		

2) 병원체 감시

일시		감염병명	발생건수(건)
	누겨		
		계	
051001	장관감염증	세부감염병	
0월0일	급성호흡기증후군	세부감염병	
	인플루엔자		

3) 응급실증후군 감시

일시	감염병명	발생건수
	누계	
	Л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೧೭೩೧೦೩	급성출혈열증후군	
0월0일	급성설사증후군	
	급성호흡기증후군(중증)	
	급성설사증후군(산발)	
	급성호흡기증후군	

② 참가자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② 일일감시현황

								주	요 상				. 1	검사,조치	
									~~ 				병원	이송	
구분	직종	연령대	성별	국적	계	발열	발 진	설 사	구토	두통	호 흡 기	기 타	입원	외래	자가 치료
계															

^{*} 증상은 중복체크 가능

① **감염병 발생 및 주요조치사항** ※ 확진 및 의심환자일 경우 작성

									211 · 0/
			환자 분류				치료 결과	나	
	구분	계	확진	의심	계	치료중	호전	완료	진단 변경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누계	수막구균성수막염								
 /1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 감염병은 발생에 따라 추가 및 삭제가능

□ 특이사항 		

붙임 8

감염병예방 홍보자료(예시)

①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포스터)





즐거운 축구경기를 즐기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요!

안전한 음식 먹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②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 감염병 별 예방수칙(만화리플렛)



③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방수칙









붙임 9

· 군중모임행사 관련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양식 [지자체]

I. 추진배경
□ 배경
□ 행사개요
○ 기간 :
○ 기년 · ○ 장소 :
○ 대회 규모 및 참가인원
○ 내외 규모 및 심기인면
Ⅱ. 비전 및 목표
Ⅲ. 세부 추진 과제
1. (대회 전) 목표(ex. 감염병 예방 철저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세부사업목표
$(\mathrm{ex.}\ \ 1)$ 예방사업 $\ 2)$ 협조체계 구축 $\ 3)$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④ 감염병예방홍보 ⑤ 점검)
2. (대회 중) 목표(ex. 신속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도치 시행)
- 세부사업목표(ex. $oxdot{1}$ 입국자 검역 $oxdot{2}$ 감염병 감시 $oxdot{3}$ 감염병 발생 시 대응
④ 감염병 소통 및 예방홍보)
3. (대회 후) 감염병 대응 평가
O. (414 T) 000 410 0/1
IV. 수행체계
□ 업무체계도
□ 추진기관 및 업무 내용
V. 추진일정
V. 丁位皇谷



> 군중모임행사 시 환자 및 감염병관리 시스템

1) 지자체 및 경기장 등 각 진료장소

작성자 성명 : 의무실명 : 연락처 : 작성일 : 년 월 일 1.3 연락처 (관계 :) 1.4 성명
1.1 성명
1.4 성별 ○ 남 ○ 여 1.5 연령 만 세 1.6 국적 ○ 국내 국외(국가명:) 1.7 숙소 ▶ 주소 : 1.8 직업 1○ 선수 ②○ 임원단(감독, 코치 등) 종목명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프리스타일스키 □노르딕 □스키점프 □스노보드 □봅슬레이 □루지 □스캘레톤 □쇼트트렉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③○ 요식업종사자(장소명 :) ④○ 자원봉사자(업무명 :) ⑤○ 관광객 ⑥○ 기타(직업명 기재) 2. 임상 증상 2.1 최초 증상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오전 ○ 오후) 2.2 기본 활력 증후 체온 : / ㎡ Hg(최고/최자) □ 있음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를 있음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있음 모를 있음 있음 있음 모를 있음 모를 있음 지급 모를 있음 있음 모를 입을 입을 모을 입을 입을 모을 입을 입을 모을 입을 입을 모를 입을 입을 입을 모를 입을 입을 모를 입을 입을 입을 모을 입을 입을 입을 모를 입을 입을 모를 입을 입을 모를 입을 입을 모를 입을 입을 입을 모을 입을 입을 입을 입을 모을 입을
1.7 숙소
1.7 숙소
8목명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프리스타일스키 □노르딕 □스키점프 □스노보드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쇼트트렉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③○ 요식업종사자(장소명:) ⑥○ 관광객 ⑥○ 기타(직업명 기재) 2. 임상 증상 2.1 최초 증상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오전 ○ 오후) 2.2 기본 활력 증후 체온:
2.1 최초 증상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오전 ○ 오후) 2.2 기본 활력 증후 체온 : 혈압 : / mm Hg(최고/최저) 있음 업음 모름 있음 업음 모른 2.3.1 발열 ○ ○ ○ ○ ○ ○ ○ ○ ○ ○ ○
2.1 최초 증상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 오전 ○ 오후) 2.2 기본 활력 증후 체온 : get : / mm Hg(최고/최저) 있음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른 2.3.1 발열 ○ ○ ○ ○ ○ ○ ○ ○ ○ ○ ○ ○
열합 : / mm Hg(최고/최자)
있음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 2.3.1 발열 ○ ○ ○ 2.3.6 근육통 ○ ○ ○
2.3.2 오심 ○ ○ ○ 2.3.8 콧물 ○ ○ ○ ○ 2.3.9 오한 ○ ○ ○ ○ ○ ○ ○ ○ ○ ○ ○ ○ ○ ○ ○ ○ ○ ○
2.3.12 기타 O O O O O O O O O
3. 조치사항 및 결과
3.1 검사 실시
고구기 ○ 치료(자가포함) 3.2 조치사항 ○ 전원(의료기관명 : , 전원일 : 년 월 일) ○ 기타 : 3.3 처방사항 약물명 기재
3.4 결과 기료중 증상호전 기료완료 진단변경(진단명 :) 기료중 기료완료 기료완료

□ 특이사항			

- ㅇ 관리현황
 - ※ 대장형식으로 별도작성 없이 차트 작성에 따라 자동 취합되고. 조회가능
 - 방문자 진료현황

연번	진료 소명	이름	나이	성별	국적	직종 명	연락 처	국내* (대리인) 연락처	숙소	주요 증상	의심 질환 명	검사, 조치	최종 결과

- 감염병 의심자 및 환자관리

		j	환자 분류			치.	료 결과		
	구분	계	확진	의심	계	치료중	호전	완료	진단 변경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의무	수막구균성수막염								
실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2)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강원도청

- ① 일일관리현황
 - 의무실 방문자 현황

(단위 : 명)

	76		Hŀ□TL	조모벼	그기ᄖ				주요	증상			
	구분		당군시	종목별	국기달	계	발열	발진	설사	구토	두통	호흡기	부상
	계												
		의무											
일시		실명											
2/1													

- * 증상은 중복체크 가능
 - 조치결과

				연령대	서벼			검사,조치	
일시	구눈	<u>!</u>	종목명		성별	국적	병원	이송	자가
				(대)			입원	외래	치료
	계								
					남				
					여				
	7171714	평창							
	경기장1								
		정선							
	경기장 2	가르							
	0/10 4	00							

② 감염병 발생 및 주요조치사항(※ 확진 및 의심환자일 경우 작성)

	구분		환자 분류	<u> </u>		j	치료 결괴	+	
	구분	계	확진	의심	계	치료중	호전	완료	진단 변경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누계	수막구균성수막염								
T/11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3) 질병관리본부

① 감염병 감시

② 장관 및 급성호흡기 표본감시

일시	감	염병명	발생건수(건)
	누계		
		계	
0월0일	장관감염증	세부 감염병	
0202	급성호흡기증후군	세부 감염병	
	인플루엔자	,	

④ 실험실 감시

일시	감	발생건수(건)	
		계	
0월0일	장관감염증	세부 감염병	
U널U털	급성호흡기증후군	세부 감염병	
	인플루엔자		

© 응급실증후군 감시

감염병명	발생건수(건)		
누계			
계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급성출혈열증후군			
급성설사증후군			
급성호흡기증후군(중증)			
급성설사증후군(산발)			
급성호흡기증후군			
	누계 계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출혈열증후군 급성설사증후군 급성호흡기증후군(중증) 급성설사증후군(산발)		

- ② 참가자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 ⑦ 일일감시현황

(단위 : 대, 명)

															사,조	기, () 치
구분		종목명	연령대	성별	국적				주요	증상				병원이송		
						계	발열	발진	설사	구토	두통	호흡기	기타	입원	외래	치료
계																
	장소 1															
경기장 1																
'																
	장소2															
경기장	장소 3															
2																

⊕ 감염병 발생 및 주요조치사항 ※ 확진 및 의심환자일 경우 작성

(단위 : 명)

		-	환자 분류	<u> </u>		j	디료 결고	ŀ	
	구분		확진	의심	계	치료중	호전	완료	진단 변경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누계	수막구균성수막염								
 /1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 감염병은 발생에 따라 추가 및 삭제가능

☞ 한랭질환발생현황

(단위 : 대, 명)

						한랭질환			
구분		종목명	연령대	성별	국적	저체온증	동상1~2도	동상3~4도	참호족 (침수병)
계									
	T F A								
경기장 1	장소								
	장소								
경기장 2	장소								

③ 감염병 실험실 검사 현황(현장검사지원단)

	78		검사	 결과	
	구분	계(의뢰건수)	양성	음성	진행중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느게	수막구균성수막염				
누계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_			
	기타(판정불가)				

□ 특이사항			

붙임11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대응 상황보고서식

1	일일상황보고
1	ココベズエエ

질병관리본부, '18.00.00()

- 1. 입국자 검역
 - □ 입국자 현황

(단위 : 명)

일자	참가 국가	계

□ 오염국가 검역 현황

(단위 : 명)

OITL	찬가 구가	게	성별		성별 건강상태질 서		입국당시 증상유무		유증상자 조치사항(건수표시)		
일자	참가 국가	계	남	여	0	×	0	×	검체 채취	보건 교육	병원 이송

*오염지역 :

- 2. 감염병발생감시 및 대응
 - □ 감염병감시
 - 1) 장관 및 급성호흡기 표본감시

일시		발생건수(건)				
	누계					
USIU01	장관감염증	세부 감염병				
0월0일	급성호흡기증후군	세부 감염병				
	인플루엔자					

2) 병원체 감시

일시		감염병명				
051001	장관감염증	세부 감염병				
0월0일	급성호흡기증후군	세부 감염병				
	인플루엔자	·				

3) 응급실증후군 감시

일시	감염병명	발생건수(건)				
	누계					
	Й					
	급성발진증후군					
	급성신경증후군					
Valvo1	급성출혈열증후군					
0월0일	급성설사증후군					
	급성호흡기증후군(중증)					
	급성설사증후군(산발)					
	급성호흡기증후군					

□ 참가자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1) 일일감시현황

						주요 증상					검사,조치					
구분	<u>1</u>	종목명	연령대	성별	국적		-		2	등상				병원	이송	TL7L
12	-	о Г	L041	02	77	계	訓 砌	발 진	설 사	구 토	두통	호흡기	기 타	입원	외래	자가 치료
계																
	장소1															
경기장 1																
	장소2															
경기장2	장소3															

^{*} 증상은 중복체크 가능

2) 감염병 발생 및 주요조치사항 ※ 확진 및 의심환자일 경우 작성

			환자 분류			j	지료 결과	ŀ	
	구분		확진	의심	계	치료중	호전	완료	진단 변경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누계	수막구균성수막염								
 /1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 * 감염병은 발생에 따라 추가 및 삭제가능
 - 3) 감염병 실험실 검사 현황(현장검사지원단)

	78		검사	결과	
	구분	계(의뢰건수)	양성	음성	진행중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누계	수막구균성수막염				
T/1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총 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기타(판정불가)				

□ 특이사항		

언론동향

□ 언론감시체계

매체명	주요내용	비고

□ SNS 및 온라인 : 특이사항 없음

매체명	주요내용	비고

4. 상담실적

구 분	1339콜센터			
T 世	금일	누계		
계	0	0		
감염병 관련 일반 정보	0	0		
여행 시 건강 수칙 관련	1	28		
감염의심 증상에 대한 문의	0	0		
의료기관 관련 문의	0	0		
우리나라 감염병관리제도 문의	0	0		

5. 대책본부 추진실적 및 계획(예시)

□ 금일 추진 실적

- ① 온라인·SNS 홍보
 - (홈페이지)
 - (SNS)
- ②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24시간 가동 관련 보도자료 배포
 - 보도배포일 :

- 보도일 :

- 보도제목 :

□ 향후 계획

1

_

_

② 의심증상자 관리대장

연번	조치 기관	이름	나이	성별	국적	종목명	연락처	국내* (대리인) 연락처	숙소	주요 증상	의심 질환명	검사, 조치	최종 결과

^{*} 국내 연락처가 있는 경우만 기재

붙임12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부서 업무 및 연락처

부 서	업 무	연락처 (043-719-)
감염병관리과	 제1군감염병 제3군감염병(인플루엔자, 비브리오패혈증,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레지오넬라증) 지정감염병(수족구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바이러스감염증) 	719–7111, 7117, 7123, 7127,
의료감염관리과	• C형간염 • 의료관련감염병	719-7581,7585, 7586, 7587
검역지원과	•입국자 검역 및 모니터링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719-7142, 7144
감염병감시과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제외: 결핵, 한센병, AIDS, 매독 인플루엔자, 비브리오패혈증,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레지오넬라증,탄저) •제4군감염병(제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AI, 신종인플루엔자, MERS, 신종감염병 증후군, 생물테러감염병) •지정감염병(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719-7176 7167
예방접종관리과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719-6848 6851
위기대응총괄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원인불명 감염병	719-7950,9055,90 64,9065, 9072, 9073,9075 (긴급상황실 7789, 7790)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위기분석	719-7555
자원관리과	•국가격리병상 운영 관리 •감염병 대응 국가비축물자 관리	719–9159, 9161, 9164, 9165
생물테러대응과	•생물테러감염병(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두창, 야토병. 제외: 마버그열, 에볼 라바이러스병, 라싸열)	719-9114, 719-9111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 에이즈 및 성병, 한센 관리사업	719-7329 7321
결핵조사과	•결핵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719-7286
감염병진단관리과	•지자체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및 총괄지원 •표준진단검사법 제공 등 검사법에 관한 업무 •지자체 검사에 대한 정도평가 지원 •검체 수송 조정 및 시행	719-7845, 7847, 7849
세균분석과	•세균성 감염질환의 실험실검사 기술지원 및 병원체감시 - 장관감염, 호흡기감염, 성매개감염, 매개체전파 세균질환 - 항균제 내성균, 의료감염균, 진균 감염증 - 인수공통감염질환 및 리케치아감염질환	719-8112, 8113, 8115, 8116, 8314, 8329
바이러스분석과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의 실험실검사 기술지원 및 병원체감시 - 장관감염, 호흡기감염, 성매개감염,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질환 -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및 바이러스성 간염	719–8194, 8195, 8196, 8197, 8198, 8207, 8218
매개체분석과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화 기생충질환의 실험실검사 및 감시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실험실검사 및 감시	719–8564, 8525, 8562, 8563, 8523, 8554
고위험병원체분석과	 두창 등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탐지 및 감시 출혈열 바이러스의 진단 및 감시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실험실검사 	719–8273, 8275, 8298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 시험의뢰 검체 운송관리	719-8045 8094

2018년도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가이드라인

발행일 : 2018.8.

발행인 :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편집인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김현준 펴낸곳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담당: 나경인 043-719-7123)